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 매뉴얼

2014년 6월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1. 노인실태조사 개요 및 조사방법	1
2. 현장조사 실시 요령	13
3. 조사매뉴얼	17
4. 별첨	96

제1장 노인실태조사 개요 및 조사방법

1. 조사목적

- 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실태조사 실시의 법제화(2007년 1월)로 매 3년 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일환으로 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 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통계청의 2011년도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노인인구는 2014년 현재 639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에는 노인인구가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0%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의 규모가 1,033만명으로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진입할 것임.
 - 이러한 노인인구의 절대수 증대와 더불어 인구구성에서 갖는 비중의 증대는 노인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요구함.
- 본 조사는 1994년, 1998년, 2004년과 2008년, 2011년 실시한 바 있는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후속조사로서 노인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의 생산을 목표로 함.
- 2014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향후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 생산 기제이므로 여러 측면에서 활용도와 신뢰도가 높은 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표본추출

1) 개요

-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노인실태조사 표본 10,000여명 추출
- 16개 시·도, 동부/읍 면부별로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본할당
- 데이터 구축을 위한 표본추출 및 이를 반영한 가중치 부여

2) 목표모집단

- 2014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일반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3) 조사모집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중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4) 모집단 층화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에서 적정 표본수를 산정하고, 전국을 16개 시도별로 층화한 다음,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지역은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2차 층화하여, 조사구 특성에 따라 표본 조사구를 추출함.
- 3개 층(권역별)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층화하여 노인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
 - 대도시 : 7개 특별·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동부)
 - 중소도시 : 9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동부)
 - 농어촌 : 9개 도 읍·면지역

3. 현장 조사 절차

1) 조사구 관할 주민센터(동·읍·면사무소) 방문

- 지도원은 조사원과 함께 해당 주민센터(동·읍·면사무소)를 방문함.
- 동·읍·면사무소에서 지도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담당자와 현지조사에 관한 협의
 - 관내도에서 조사지역 복사, 경계선 표시
 - 조사표 및 조사용품 인수(각 조사구에서 사용할 조사표와 각종 물품은 조사본부에서 조사전에 해당 동·읍·면사무소로 우송)
 - 기타 지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이때, 조사원은 적당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됨(지도원이 동·읍·면사무소에 담당자와 협의를 할 때에는 조사원을 동석시킬 수도 있음).

2) 통·이장 및 반장 방문

- 숙박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동·읍·면사무소)에서 협의 후 조사구 내 또는 인접 지역에 숙소를 정함.
- 지도원은 통반장(이장)을 방문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를 부탁함.
 - 특히 노인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확인
- 이때, 조사원은 숙소에서 대기하거나 지도원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3) 조사구 경계선 확인

- 조사구 경계선 확인은 원칙적으로 지도원이 하여야 함.
- 조사구에 관한 자료로는 배부되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요도를 사용함.

- 1개 조사구에는 1개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가 포함되므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마다 조사구역도가 배부됨.
- 제시된 조사구역도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시 작성된 것임.
 - 조사구역도에 있는 건물이 철거되어 현재는 없을 수도 있음.
 - 조사구역도에는 공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주택이 신축되어 있을 수도 있음.
 - 조사구역도에 건물 표시가 없다고 해서(공지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공지에 신축된 건물을 조사구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됨.
- 조사구 경계선은 무조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의 경계선을 따라야 함.

4) 조사구역도의 수정·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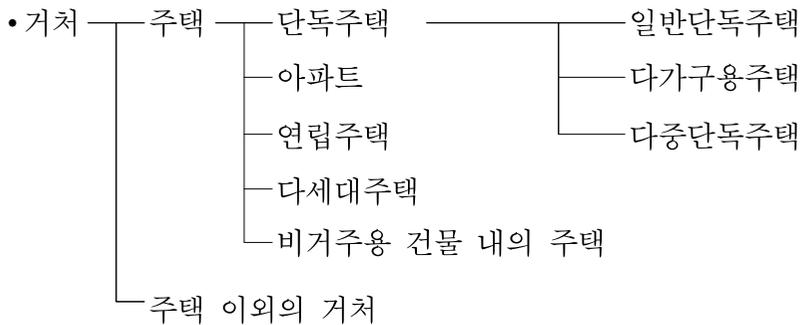
- 조사구 경계선 확인이 끝나면 조사구역도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 철거된 건물이 발견되면, 조사구역도의 해당 건물에 “×” 표시를 함.
 - 신축 건물은 크기에 비례하도록 추가함.
 - 기타 지형지물이 바뀌었을 때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수정·보완함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역도가 배부된 경우라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시의 구역도가 비치되어 있거나, 동·읍·면사무소의 안내도가 더 잘되어 있으면, 안내도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5) 조사구의 분할

- 지도원이 조사구를 4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조사원에게 각각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줌.
- 구역수는 조사원수와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현지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결정함.
 - 1명의 조사원이 2개의 구역을 담당할 수도 있고, 2명의 조사원이 1개의 구역 또는 4개의 구역을 담당할 수도 있음.

6) 가구의 확인

- 담당 구역이 결정되면 이 순서에 따라 첫번째 가구부터 차례대로 방문하여 노인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여기서 거처라 함은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주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거주목적으로 지어진 집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건물을 말함.
 - ① 영구적인 성격의 건물
 - ② 1개 이상의 방과 부엌
 - ③ 독립된 출입구
 -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1단위
-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 : 거주목적이 아닌 건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함(예: 상업용 건물 내의 주택)
- 주택 이외의 거처 :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예: 판잣집, 임시 막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점 또는 사무실 등)
- 한 건물이 여러 개의 거처로 구분되어 거처마다 거처번호를 기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음 거처번호와 마지막 거처번호를 연결시켜 기입한 다음에 조사구요도의 적당한 부분에 이에 관한 설명을 추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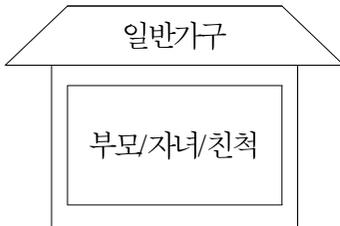
- 13~16번까지 4개 거처의 경우에 “13-16”으로 기입하고, 조사구요도의 적당한 위치에 “13번 거처(지하), 14번 거처(2층 우측), ...” 등과 같은 설명을 추가
- 설명을 추가하지 않고 조사구요도의 여백에 13~16번 거처를 부분 확대하여 그려도 무방함.

4. 가구 및 가구의 개념

1) 일반가구의 개념

- 일반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가구를 포함한다.

1
가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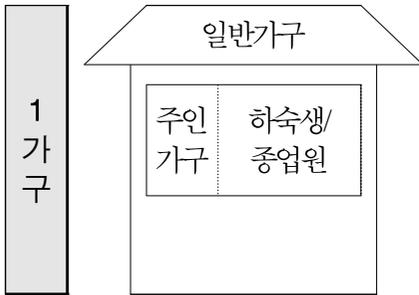


-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등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 1가구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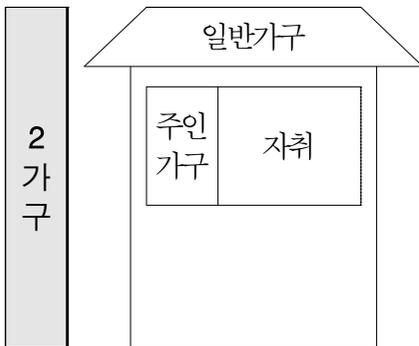
2
가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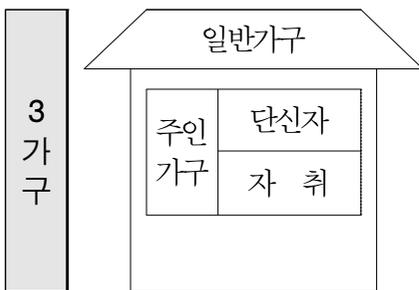
- 친척과 같이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가구로 보아 2가구로 조사한다.



-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종업원은 주인가구의 동거가구원으로 보아 1가구로 조사한다.
- 단, 이들 하숙생 또는 종업원이 6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주인가구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주인가구와 독립시켜 별개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 주인가구와 생계를 달리하는 5인 이하의 자취생은 이들 자취생만을 별개의 가구로 보아 2가구로 조사한다.
- 그러나 자취생들이 함께 살지 않고 각기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을 때에는 각각을 별개의 가구로 본다.



- 주인가구와 함께 살고 있으나 숙식을 달리하는 단신자와 자취생은 각각을 1가구씩 별도로 분리하여 조사한다.

2 가 구	다방, 음식점 등	
	주인 가구	별도로 숙식하는 5인 이하의 종업원

- 다방, 음식점, 상점 등 영업장소에서 주인 가구와 별도로 숙식하는 종업원은 이들 종업원만을 별도 가구로 조사한다.
- 그러나 숙식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5인 이하이면 주인가구에 포함시켜 동거인으로 조사하고, 6인 이상이면 이들을 독립시켜 별도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2 가 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관리인 가 구	학 생	학 생
	학 생	학 생	학 생
	학 생	학 생	학 생

- 기숙사,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 내에 거주하고 있는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의 경우 공동취사를 하지 않고 독립취사를 하고 있으면 이들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를 별도의 일반가구로 조사하고, 기숙생 또는 시설수용자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2 가 구	외국인가구, 중국음식점 등	
	외국인 가구	한국인가정부 /종업원 등

- 외국인 가구 또는 외국인 사업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가정부, 종업원은 숙식을 같이하든 달리하든 외국인 가구와 별도로 분리하여 조사한다(5인까지는 일반가구, 6인 이상은 집단가구로 조사). 단, 외국인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가구확인시 유의사항

- 보육원, 경로당, 수도원 등의 특수사회시설 및 각종 기숙사 시설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 조사에서는 가구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조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안의 일반가구는 조사하여야 한다.
- 하나의 거처에 2개 이상의 가구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세든 가구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한 집에서 형의 가족과 동생의 가족이 함께 살지만 형의 가족과 동생의 가족이 각각 따로 밥을 해먹는 경우에는 2개의 가구로 한다.
- 한 지붕의 건물에 출입문이 2개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문별로 별개의 거처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출입문별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곳에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토록 한다.

2) 가구원의 개념

- 가구원이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가구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란 용어와는 개념상 구분된다.

가구원에 “포함” 되어야 할 사람	가구원에서 “제외” 되어야 할 사람
1) 여행, 출장 등으로 국내·외의 다른 곳에 잠시 출타 중인 사람 2) 기도원, 병원에 입원(입소) 중인 사람 3) 방위소집, 1개월 미만의 가출자, 미결수 등 4) 선박, 항공기, 철도 탑승 승무원 5)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는 하숙인, 자취인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동거 중인 사람	1)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외지 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2)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에 살고 있는 사람 3) 군대 또는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집을 떠나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장기간 요양하거나 수용되어 있는 사람

5. 가구명부의 작성

- 1) 가구명부는 조사구역도에 표시되어 있는 집(거처)을 방문하여, 각 집(거처)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에 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놓은 표라고 할 수 있다.
- 2) 가구명부의 작성 및 확인
 - 해당 조사구의 가구명부는 그 조사구 구역을 담당하는 조사원이 하나의 거처(집) 및 가구방문 조사를 마치고 다음 거처를 방문하기 전에 매번 작성한다.
 - 조사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번호까지만 기입하고 재방문하여 조사 및 명부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 1개 조사구 구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가구명부작성이 완료되면, 조사지도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3) 노인거주 여부 및 가구형태 확인
 - 조사지도원과 협의된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구를 방문하여 노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 방문으로 통하여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인가 여부를 확인하되, 3번 이상 방문하여도 가구원을 만날 수 없는 경우는 가구형태에 (8) 노인가구 여부 미 확인으로 기록한 후 대상노인 수 이하 내용은 빈칸으로 둔다.

《 가구명부의 구성 및 작성 방법 》

기본항목	① 조사구 번호 ② 행정구역 ③ 지도원(조사원) 성명 ④ 작성일자 ⑤ 대상가구 수 ⑥ 완료가구 수 ⑦ 대상노인 수 ⑧ 완료노인 수
① 거처번호	- 조사구요도에 표시한 거처(집)번호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② 가구번호	- 1개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기입한다 예) 1개 거처에 3가구 거주 → 가구번호는 1, 2, 3을 기입 1개 거처에 1가구 거주 → 가구번호는 1
③ 가구주 성명	- 각 가구의 가구주 성명을 기입한다.
④ 주소	- 각 가구의 도로명 및 상세주소를 기입한다(거처가 동일할 경우 주소는 동일하게 기입한다).
⑤ 방문회수	- 방문회수를 기록한다. 조사표에 기록된 방문회수와 일치해야 한다.
조사 관리 항목 가구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 비노인가구 - (1) 만 65세 이상 노인 혼자 사는 독신(1인)가구 - (2) 만 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부부중 한 사람이라도 만 65세 이상인 경우) - (3) 자녀동거 노인가구 - (4) 기타 노인가구 - (8) 노인가구 여부 미확인: 3번 이상 방문했으나 노인이 가구원인 가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대상노인 수	- 각 가구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수를 모두 기입한다.
⑦ 가구 내 노인번호	- ‘가구조사표’의 가구원 사항 조사에 기록된 노인과 의 관계를 참고하여 1번부터 번호를 부여한다.
⑧ 노인 성명	- ‘가구조사표’의 가구원 사항 조사에 기록된 노인의 성명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⑨ 노인개인조사표	- 완료여부를 표시하고 미완인 경우 그 이유를 조사표 표지(방문결과)에서 이기함
⑩ 비고	- 그 가구의 조사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입한다.

2014년 가구명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구 번호		조사원 성 명	(인)	작성 일 자	2014년 월 일		
	행정구역		대상 가구 수		완료 가구 수	대상 노인 수		완료 노인 수

일련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주 성 명	주 소 (도로명 주소)	방문 횟수	가구 형태	대 상 노인 수	가 구 내 노인번호	노 인 성 명	노인개인 조사표		비 고
										완료 여부	미완 이유	
1	1	1	김 00	주소-1	1	2	2	1	0 0 0	1	0	
2			김 00	주소-1	1	2	2	2	0 0 0	1	0	
3		2	이 00	주소-2 【노인가구인 것이 확인되었으나 3번 이상 방문하여도 노인을 만날 수 없어 노인개인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	3	1	1	1	0 0 0	0	2	
4	2	1	빈칸	주소2 【3번 이상 방문하여도 가구원을 만날 수 없어 노인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8	빈칸	빈칸	빈칸	빈칸	빈칸	

【기입요령】 1. 가구형태: (0) 비노인가구 (1) 노인 독신(1인)가구 (2) 노인부부가구 (3) 자녀동거 노인가구 (4) 기타 노인가구

(8) 노인가구 여부 미확인

2. 조사표의 완료여부: (0) 미완 (1) 완료

미완 이유: 조사표 표지(방문결과) 에서 이기함.

(0) 비해당(완료) (1) 늦은 귀가 (2) 장기출타 (3) 부재중(원인 미파악) (4) 응답거부 (5) 기타_____

제2장 현장조사 실시 요령

1. 조사원의 역할

- 1) 노인실태조사는 정부승인 지정통계조사이며, 이 조사의 내용이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법(통계법 제33조, 제34조)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 2) 조사원은 이 조사의 기본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조사원이 얼마나 성심 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이 조사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 3) 담당 조사구(구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가서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담당 조사구(구역)내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여야 한다.
- 4) 각 가구에서는 그 가구의 가족 중 믿을 수 있는 응답자를 만나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믿을 만한 응답자를 만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방문하여야 하며, 방문시간은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언제라도 좋으나 너무 이른 새벽이나 한밤중은 피하는 것이 좋다.
- 5) 조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각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명부를 작성하여, 가구중 노인가구 즉, 노인조사 대상자(만 65세 이상)가 있는 가구를 찾아낸 다음, 노인개인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 6) 따라서 조사원은 근본적으로 각 가구에서 가구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노인조사대상자를 누락 없이 찾아내고 각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조사표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7) 조사결과 알게 된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내용은 절대 비밀로 하여야 한다(통계법 제8조).
- 8) 조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조사지도원의 역할

- 1) 지도원은 조사원이 조사업무 수행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며 조사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준다. 또한 조사원이 교육받은 그대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2) 지도원은 조사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설명과 함께 조사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준다.
- 3) 지도원은 조사원이 조사한 조사표를 올바르게 기재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 4) 지도원의 팀 내 협조관계 유지여부가 조사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 5) 주민센터(동사무소)와 업무협의 및 협조요청
 - 가) 담당자에게 찾아 온 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협조사항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
 - 나) 조사구 내의 가구수를 문의한다.
 - 다) 문의 결과의 가구수가 기본자료의 가구수보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일단 다음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
 - 2010년 11월 1일 이후 입주한 신축아파트 유무
 - 신축주택에 의한 가구증가 여부
 - 기존 주택 철거 후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신축에 의한 가구증가 여부
 - 주위의 특수한 환경에 의한 세든 가구의 증가 여부
 - 주민등록가구수인 경우 실제 가구수와의 차이 정도
 - 라) 가구수가 기본자료의 가구수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에는 일단 다음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
 - 주택의 철거여부

- 다른 지역(예: 도시지역)으로 점차적인 진출여부

마) 조사구내에 아파트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관리사무소장에게 조사팀의 조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요청
- 경비실 통과에 저지를 받지 않도록 해당 경비실에 통보
- 옥내 방송시설이 있으면 조사협조 방송의뢰
- 해당 동의 출입구 게시판에 조사안내문 부착
- 조사안내문 부착의 경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거
 -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동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조치를 취한 다음에 조사를 착수한다(조사가 완료되면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
- 조사구 안내 및 통반장 소개 및 안내문 배부를 의뢰한다. 이 때, 실제로 통반장은 조사안내문 배부 의무가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6) 조사구의 경계선과 현황을 파악

가) 조사지역의 범위(경계선)를 철저히 확인한다.

나) 통반장에게 지역의 특수성, 조사에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을 문의하고 조사협조를 의뢰한다.

7) 경계선은 확실하나 가구수의 변동이 심한 경우

가) 가구수가 적은 경우: 주택의 철거, 도로신설, 기타의 이유 등으로 기초자료의 가구수보다 너무 작은 경우에는 우선 조사를 착수한 다음, 본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가구수가 많은 경우: 주택 신축·개축으로 가구수가 많이 증가하여도 모두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단 조사구 한 쪽을 남겨 놓고 조사를 착수한 다음, 연구원 노인실태조사 담당 연구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불응가구 대한 대응

가) 조사원이 불응을 당하였을 때에는 상황을 듣고, 조사원의 재방문 여부와 해당가구에 지도원의 직접 방문여부를 판단한다.

나) 통반장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다.

9) 출발 및 도착보고

가) 조사구에 도착하여 연락처가 결정되면, 즉시 전화번호를 연구원에 통보한다.

나) 필요한 경우 관할 동·읍·면사무소에 조사지역 안내를 부탁한다.

제3장 조사매뉴얼

표지

【조사구 번호】

7자리의 행정코드를 기입한다. <별첨 9> ‘시·군·구 및 조사구 번호’ 참조

【거처 번호】

가구명부에 기록된 거처번호를 기입한다.

새로이(추가) 파악된 거처의 경우는 81번부터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가구 번호】

가구명부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가구 번호를 기입한다.

【가구 내 완료노인번호】

‘가구조사표’의 ‘가구 내 완료 노인 수’를 기준으로 가구내 노인조사표의 번호를 기입한다.

【조사구내 완료노인번호】

조사표 번호는 매 ED(요도)마다 01부터 새롭게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조사구에서 조사된 노인 수와 노인개인조사표의 마지막 번호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주소】

가구의 주소를 기입한다. 도로명 주소(신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를 정확히 기억한다. 지번주소(구주소)의 경우는 조사 진행상 구주소로를 참고해야 할 경우를 위하여 마련해둔 공간이다.

예: 신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주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구주 성명】 가구주 성명

가구주 성명을 기입한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성명, 가구원번호, 연락처

응답자 성명을 기입한다. 응답자의 가구원번호, 휴대폰 번호도 작성한다. 응답자1은 조사대상노인의 특성을 응답한 사람, 응답자2는 『N. 가구 경제상태』(과 『A. 가구 일반사항』)을 응답한 사람을 기록하도록 한다. 가구사항은 응답노인을 통하여 가구원 사항(A)을 파악할 수 없어 가구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가구원으로부터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노인이 혼자 또는 배우자와만 생활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응답자2를 통하여 『N. 가구 경제상태』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응답자2은 『N. 가구 경제상태』를 응답한 사람이다.

노인개인특성과 가구원 사항을 동일한 응답자가 응답한 경우는 응답자1과 응답자2는 동일하다. 응답자1은 조사대상노인을 기록하고 응답자2는 『N. 가구 경제상태』를 응답한 사람을 기록하도록 한다. 대리응답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기록하며 비동거 가구원이면 가구원 번호는 ‘97’로 기록한다. 응답자1의 경우 응답유형이 본인응답, 동거인 대리응답, 비동거인 대리응답인지를 기록한다.

【응답유형 및 대리응답자의 노인과의 관계】

응답은 조사대상자에게서 직접 응답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응답대상자를 만났지만 개인용 응답 대상자가 말하거나 듣기 장애, 거동 불편, 노쇠,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장애가 있어 응답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리응답이 가능하다. 단 ★마크가 있는 문항은 대리응답을 받아서는 안되므로, 대리응답의 경우 비해당 처리한다.

대리응답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동거인 또는 비동거인 모두 응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별거하고 있는 딸이 조사대상자의 집을 방문한 경우 대리응답자가 될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응답유형이 본인응답, 동거인 대리응답, 비동거인 대리응답으로 표기하고, 대리응답인 경우 <별첨1> ‘노인과의 관계’를 참고로 하여 노인과의 관계 번호를 기입한다.

[대리응답 적용 대상 및 선정 기준]

(1) 대리응답의 적용 대상

대리응답은 개인용 응답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하여 설문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밖에 응답자가 언어적 표현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병상에 있는 경우에는 응답자와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대리응답을 실시합니다. 응답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치매가 있는 등 의식이 없어 불가피하게 설문참여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는 대리응답을 실시합니다. 응답자의 의식이 있는데 대리응답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 노인의 대리응답이 실시되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대리응답자 선정

대리응답자는 개인용 응답자의 생활과 건강상태 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성인(적어도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사대상 노인의 대리 응답자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 자녀나 가족 내에서 우선 대리응답자를 찾고 그 밖에 친구, 이웃 등도 대리응답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리응답 적용 및 선정 시 유의사항

- 대리응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리응답자가 없는 경우

대리응답자와 만날 수 있는 시간에 다시 방문하여 대리응답자에게 조사한다.

- 부분적인 대리응답만 가능한 경우

일부분만 대리응답자가 응답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리응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적격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 조사지도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 외상이나 골절, 낙상 또는 가벼운 수술을 받았으나 응답이 가능한 경우

응답자의 상태가 양호하여 본인도 허락하고 설문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대리응답을 하지 말고 직접 응답을 받는다.

- 시한부 환자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응답자의 건강상태와 응답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만일 응답자가 직접 응답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리응답을 실시한다.

- 조사 기간 중 응답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퇴원하는 경우

조사기간 안에 응답자가 퇴원을 하면 기다렸다가 직접 응답자에게 응답을 받도록 한다.

【조사표 관련】 조사표 완료 소요시간, 총방문횟수, 각 방문별 결과 및 미완사유,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지도원 성명

해당항목	기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완료 소요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완료되기까지의 시간을 ‘분’ 으로 계산하여 작성한다. 예를 들어 1시간 20분 걸린 경우 80분으로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방문회수 • 방문일시 • 방문결과 • 미완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방문한 횟수에 따른 방문일시, 방문결과를 기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횟수가 7회 이상인 경우는 ‘7’ 로 기입한다. . 방문회수가 4회 이상일 경우는 3차 방문의 방문일시와 최종방문의 방문일시가 다를 수 있다. - 방문일시를 작성할 때 ‘_월 _일 _시_분’ 은 공란 없이 다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u>조사 시작 시간</u>을 기준으로 기록한다. 특히 ‘완료’ 의 경우는 공란없이 다 채운다. - 방문결과 중 기타의 사유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하고, 해당하는 미완사유 번호를 기록한다 ④ 일부 문항 미완은 한번의 방문으로 조사표가 완료되지 못하여 재방문하는 경우를 고려한 선택지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 성명 • 지도원 확인(미완사유) • 조사지도원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가 완료되면, 조사원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을 한다. - 조사표 점검과 부호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도원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하고 최후로 서명을 한다. 조사표가 미완인 경우 사유를 작성한다.

A. 가구 일반 사항

【응답자】

가구일반사항 및 가구경제상황은 가구상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가구원을 응답자로 한다.

【무응답 및 비해당 처리 원칙】

- ① 무응답 : ‘8’, ‘98’, ‘998’, ‘9998’ 로 기입한다.
- ② 비해당 : ‘9’, ‘99’, ‘999’, ‘9999’ 로 기입한다.
- ③ 실수 기입: 응답값이 7 이상일 경우 응답칼럼 수에 따라 응답가근 최고수 (무응답, 비해당 제외)인 ‘7’, ‘97’, ‘997’, ‘9997’ 로 기입한다.

【가구원 수】

면접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가구 내에 3개월 이상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수를 모두 기입한다.

또한 학업으로 인하여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 등 별도의 거주지에서 거주는 초·중고·대학생의 경우는 (현재 가구 내에 3개월 이상 같이 살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부모가 가구원으로 언급한다면 가구원으로 포함한다.

가구원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아래의 기준으로 가구원을 기입하십시오.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름을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가구원 (조사해야 할 사람):

가구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혈연이나 혼인관계(사실혼)로 연결된 구성원

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

(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의 비친·인척 제외)

나. 다른 지방이나 해외 근무, 장기입원이나 요양,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3개월 미만 떨어져 살거나 한달에 1번 이상 방문하는 경우

2. 비가구원 (조사해서는 안 될 사람)

가. 따로 사는 미혼·기혼자녀

나. 미혼자녀 중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다. 3개월 미만으로 방문 또는 기거하는 친·인척

※ 분가란 이 가구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따로 떨어져 사는 관계가 지속적인 상태를 말한다.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따로 살게 되거나, 자녀가 장성하여 독립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일시적 별거, 학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만 떨어져 사는 경우는 가구원으로 간주하여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노인(만 65세 이상)가구원 수】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개인조사 대상이 되는 가구원 수를 기입한다

【조사완료노인 수】

가구내에서 조사가 완료된 노인 수를 기입한다

【노인가구형태】

〈별첨2〉 ‘노인가구형태’ 를 참고로 하여 기록한다.

1쪽 가구 일반사항에서 노인과 동거하는 자녀가 혼인은 하였으나, 별거 중이거나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가구형태는 기혼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자녀의 혼인상태 중심으로 기입한다. (미혼, 사별, 이혼, 별거는 기혼으로 처리함).

가구내 노인이 다수일 경우 각 응답자에 대하여 별도의 설문지를 작성하며, 노인가구형태는 응답노인을 기준으로 한다.

※ 예:

- 노인이 배우자와 별거 중인 장남과 거주할 경우→11자녀 동거노인가구 ①(기혼장남)
- 가구일반사항에서 며느리가(남편과 아이들은 근거리에서 생활) 시어른 병간호 때문에 3개월 이상을 같이 살고 있을 때 며느리는 본거주지가 있고, 간호를 위해 잠시 조사대상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다.
- 딸(아들) 사망한 사위(며느리)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동거로 간주한다. (예: 딸이 사망한 둘째 사위와 동거하는 노인= ‘13’ 번)
- 시골농사, 배우자의 타지역 병원치료, 타지역 자녀와의 동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있어도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노인 배우자의 생활본거지를 응답노인의 가구에 두고 있어도 왕래횟수가 월1회 미만이면 별개의 가구로 간주한다.

【동거자녀 수】

응답노인의 동거자녀 수를 가구원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성별, 결혼 여부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문A1, 문A2】 이름 및 가구주와의 관계

각 가구원의 이름을 기입하고, 각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기입한다. 이 때 응답대상 노인이 가구주인가를 확인한다. 가구주는 1번이며, 항상 위에 기록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는 주관식으로 기입한 후, 〈별첨3〉 ‘가구주와의 관계’ 를 참조하여 코드를 기입한다.

【문A3】 성별

성별(남성, 여성)을 작성한다.

【문A4】 연령

주민등록상 생년, 생월을 기록한다. 각 문항에 대해 가능한 한 ‘모르겠다’는 응답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조사대상자의 나이를 묻고, 앞서 기록한 출생 년월을 참고하여 만 나이를 기록한다. 만 연령의 계산은 201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별첨4〉 ‘간지 및 띠별 연령대조표’와 〈별첨5〉 ‘만연령 조건표’ 참조). 2014년 6월 30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만연령을 ‘00’ 세로 기록한다. 모든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만 나이로 한다. 정확한 연령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 생년 월일과 더불어 띠를 기록하여 재확인한다.

【문A5】 혼인상태

법적인 결혼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5세 이상인 자에 대한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만 14세 이하의 가구원일 경우는 ‘9 비해당’ 처리한다.

혼인상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미혼, 유배우(배우자 있음, 기혼), 사별(기혼), 이혼(기혼), 별거(기혼)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실제 부부생활을 하고 있거나 했던 경험을 기초로 한다.

부부가 취업, 취학, 기타 이유 등으로 잠시 (혹은 해외취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일 수도 있음) 떨어져 있는 경우는 유배우로 간주하며, 기간은 비록 짧더라도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헤어져 있는(아직 이혼한 상태는 아님) 경우는 ‘별거’로 간주한다. 미혼모의 결혼상태는 ‘미혼’으로 기록한다.

※ 탈북자의 경우 : 배우자가 북한에 있다면 ‘③사별(기혼)’으로 체크하고, 가족과의 접촉 부분 설문은 비해당 처리한다. 단, 탈북자가 남한에 와서 가족(배우자 포함)이 생겼다면, 남한의 현재가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문A6】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무학(글자모름), 무학(글자해독), 초등학교 재학 및 졸업, 중학교 재학 및 졸업,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대학(4년 미만) 재학, 휴학 및 졸업, 대학교 이상(대학교 재학, 휴학 및 졸업, 석사 재학, 휴학 및 졸업, 박사 재학, 휴학 및 졸업), 미취학(만10세 이하의 미취학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중퇴나 퇴학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중퇴는 중학교 졸업으로, 중학교 퇴학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작성한다. 또한 대학교 4년과정중 2년만 다녔으면 ⑤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록하며, 교육연수는 14년이다. 한편 만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인 학력으로 코딩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재학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로 코딩한다.

노인조사 대상자인 경우는 교육연수를 기록한다. <문 A9>에서 노인조사 대상으로 기록된 가구원에 대해서는 각각 교육연수가 기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노인응답대상자가 2명인 경우, 한 설문지에 2명의 교육연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설문지에 해당하는 사람 것만 적으라는 뜻이 아니며, 그 가구원 중에 응답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것을 적는다.

노인의 교육수준이 무학일 경우, 교육연수는 0으로 기입한다. 노인 아닌 가구원의 교육연수는 ‘99 비해당’ 처리한다.

<문 A6-2> 교육연수: 중퇴의 경우 <문 A6-1> 교육수준에는 졸업한 학력까지를 표시하고, <문 A6-2>교육 연수에는 실제 교육연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중2때 중퇴한 경우 <문 A6-1>은 (3)초등학교로 코딩하지만, <문 A6-2>에는 실제 학교를 다닌 연수인 8년이라고 기입한다.

【문A7】 취업여부

취업여부를 작성한다. 취업의 정의는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 배우자/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1주일동안 18시간 이상 돈을 받지 않고 일한 경우’ 이다. 예, 아니오로 체크하며, 만 14세 이하는 ‘9 비해당’ 처리한다.

【문A8】 응답노인과의 관계

가구원과 응답대상자인 노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다. 노인과의 관계를 주관식으로 기입한 후 <별첨 1> ‘노인과의 관계’ 를 참조하여 코드를 기입한다.

【문A9】 노인조사 대상자 확인

노인조사 대상자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64세 이하이면 ①,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개인조사가 완료되었으면 ②로 코딩한다. 만 65세 이상이지만 노인개인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③로 코딩한다.

노인 부부가 장기간 따로 산 경우(예: 서로 다른 자녀의 집에 거주)에는 노인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이어도 가구원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문A10】 가구원 수의 변화

2013년과 현재(조사시점)를 비교하여 가구원 수에 변화가 있는지 증감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2013년도 가구원 수를 기록한다. 2013년의 가구원 수를 파악하는 이유는 소득의 경우 2013년 1년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13년 기간중 가구원 수의 변동이 있었다면 가장 긴 기간 지속된 가구원 수를 기록한다. 즉 2013년 5개월간의 가구원 수가 3명이었으나 나머지 7개월간의 가구원 수가 2명이었다면 7개월간의 가구원 수인 2명을 기록하도록 한다.

조사 시점의 가구원 수와 2013년의 가구원 수(가구원이 가장 많았을 때 기준)를 비교한 결과와 가구원 수 변화에서 동일, 증가, 감소 여부에 대한 파악결과가 동일하여야 한다.

- ※ 동일가구내 조사대상노인이 2명 이상인 경우는, 『A. 가구 일반사항』은 1명만 조사하고 이기할 수도 있지만 가구주와의 관계나 응답노인과의 관계는 다름에 유의하여야 한다.

B. 건강 상태

【문 B1】 주관적 건강평가

WHO에서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에는 건강수준의 상태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주관적 건강 인식도가 삶의 만족도 평가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문 B1>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조사응답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확인한다.

【문 B2】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평가

<문 B1>이 비교대상이 없는 건강상태라면, 본 질문에서는 동년배, 같은 또래와 비교했을 때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문 B1>에서는 건강하지 않다고 하여도, <문 B2>에서는 동년배와 비교했을 때는 건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 B3】 만성질환 상태

- ① 조사대상자가 조사 기준일에서 3개월 이전부터 그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경우
- ② 질병의 형태가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의 기한을 요하는 만성질환인 경우
- ③ 모든 만성질환은 그로 인한 활동제한 유무, 치료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됨.
- ④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 중에서 만성질환이 오래 경과되면서 복합적인 증세가 나타나거나 노인들이 자신의 증상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노인이 호소하는 증상 또는 질환명에 따라 분류함.
- ⑤ 의사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의사의 진단명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응답한 질병명 또는 증상에 따라 분류함.

<참고> 만성퇴행성질환의 특성

- ① 일단 발생하면 3개월 이상 오랜 기간의 경과를 취함.
- ②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결국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악화가 거듭 될 때마다 병리적 변화는 커지고 생리적 상태로의 복귀는 적어짐.
- ③ 퇴행성이란 어휘가 의미하듯이 대부분의 만성퇴행성 질환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유병률이 증가함.

【문 B3-1】 ~ 【문 B3-3】 만성질환 종류별 유무, 의사진단 여부 및 현재 치료 여부

〈문 B3-1〉의 1) ~ 29)에서 구체적인 질환별로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가를 묻고, 질환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30)에서 만성질환 1개(응답자 판단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환명을 기록하도록 한 후, 그 질환의 의사진단 여부와 치료 여부를 파악한다.

5) 기타 심장질환은 심부전증, 부정맥 등이 포함되고, 11) COPD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의미하며, 17) 암(악성신생물)은 모든 종류의 암을 포함한다.

암이 있었으나 완치되었고 정기검진만 받고 있는 경우 발병시점으로부터 5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아 재발하지 않고 의학적 치료(약물포함)를 받지 않고 있는 때에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본다.

〈문 B3-2〉의 의사진단 여부는 〈문 B3-1〉에서 ①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만성질환이 의사진단을 받았는가를 묻는 항목이다. 각 만성질환에 대하여 질환이 없다고 하는 경우 즉, 〈문 B3-1〉의 1) ~ 30) 각각의 만성질환 여부에 대한 응답이 ‘(2) 아니요’ 인 경우는 ‘9 비해당’ 처리한다.

〈문 B3-3〉의 치료 여부는 〈문 B3-2〉에서 해당 만성질환이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현재 그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문 B3-2〉의 1) ~ 30) 의사진단 여부에 대한 응답이 ‘(2) 아니요’ 또는 ‘(9) 비해당’ 인 경우는 ‘9 비해당’ 으로 처리한다.

※ 【조사원 확인사항】

〈문 B3〉의 응답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응답자가 갖고 있는 총 만성질환수를 실수로 기입한다. 이 때 기준은 의사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수를 기록하고, 의사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즉 〈문 B3-1〉의 모든 항목이 ‘(2) 아니요’ 인 경우, 또는 〈문 B3-2〉의 모든 항목이 (2), (9)인 경우는 ‘00’ 으로 기입한다. 만성질환 수 계산시 의사진단을 받은 30) 기타 만성질환이 있으면 1개로 간주하여 합산한다.

【문 B4】 복용중인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의사 처방약 개(알)수

현재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처방하여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약의 알약 개수가 몇 개인가 실수로 기입하고, 만성질환 처방약이 전혀 없는 경우는 ‘00’ 으로 기입한다.

하루에 고혈압과 당뇨 치료를 위해 2개의 알약을 복용중이라면 2개(알)이라고 응답하도록 한다. 단, 건강을 위한 비타민, 무기질이나 보약(한약), 안약 등은 제외하고 알약 형태의 복용 처방약만 포함한다.

【문 B5】 보건의료기관 방문 횟수

지난 1개월간 병원, 의원, 보건(지, 진료)소, 한의원, 치과 등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횟수를 기입한다. 하루에 2개소를 방문하였을 경우 2회로 기입한다. 만약 보건소를 방문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한 독감 무료접종을 하였더라도 보건소 방문이 의료기관 횟수에 포함되고, 의료 비용과는 무관할 수 있다. 이용한 경험이 없다면 ‘(2) 없다’ 로 기록하고, 그 횟수는 ‘99 비해당’ 으로 기록한다.

【문 B6】 병원입원 횟수

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횟수를 파악하고 있다. 이용한 경험이 없다면 ‘(2) 없다’ 로 기록하고, 그 횟수는 비해당 ‘99’ 로 기록한다.

【문 B7】 우울증 판정도구

다음의 15개 항목은 노인의 우울증을 판단하기 위한 문항이다. 1번부터 천천히 읽어주어 충분히 생각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15개 문항에서는 최대한 모르는 답은 응답(무응답)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C. 건강 행태

【문 C1】 흡연 여부

흡연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임상적으로도 밝혀져 있기 때문에 건강수준의 악화 과정을 예견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한다. 현재 흡연 여부를 파악한다.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흡연으로 간주한다.

【문 C2~ C2-1】 음주

음주의 습관을 통한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음주로 인한 질병 및 사고의 발생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지난 1년간 음주 빈도로 파악하며, <문 C2-1>에서 음주 1회 평균 음주량을 질문한다. 주중에 따라 잔의 기준을 고려하여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하도록 한다. 단 제사, 차례, 종교의식 등에서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음주에서 제외한다. <문 C2>에서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문 C3>으로 가며 <문 C2-1>은 '99 비해당' 처리한다.

【문 C3~C3-3】 운동 실천 행위

운동이란, 업무 또는 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형의 움직임은 제외하고 '운동을 하기 위한 시간을 할애한 경우'에 해당 된다.

운동을 하는지를 묻고, 운동을 한다면 1주일에 며칠 하는지, 한 번 운동할 때 몇 분씩 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주로 하는 운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별첨 6> '운동 목록표'를 참조하여 (세부활동)코드로 기입한다. 여러 개의 운동을 하는 경우는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1주일에 1회 미만인 경우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 C3>의 응답이 '(2) 아니요'인 경우는 <문 C3-1>~<문 C3-3>은 모두 '9 999 비해당' 처리한다.

【문 C4】 몸무게와 키

노인의 키는 준비한 줄자를 활용하여 최대한 몸을 곧게 펴서 측정하도록 한다. 허리나 등이 많이 굽어 있고 본인이 도저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 등을 따라 굽은 상태로 재어 기록한다. 외상 상태 등,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응답자에게 질문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몸무게는 노인의 가정 내에 체중계가 있을 경우 측정하도록 하고, 체중계가 없을 경우 노인에게 질문하여 가장 최근에 측정한 몸무게를 기입하도록 한다. 몸무게와 키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고, 잘 모르는 경우는 무응답 코드인 '998' 로 기입한다.

【참고】 키와 몸무게 측정

(1) 키

- 준비물(줄자, 접착종이)
- 측정방법
- ① 키를 측정하기 위해서 응답자가 바르게 서게 한 후 발뒤꿈치와 어깨가 가능한 한 벽에 가깝게 닿도록 하여 응답자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때 편안하게 섰는지 확인합니다.
- ② 응답자의 머리 꼭대기 부분에 접착 종이(post-it 등)를 벽에 붙여 표시합니다.
- ③ 응답자가 벽에서 물러나서 앉도록 합니다.
- ④ 줄자를 사용하여 문지방이나 바닥, 면접원의 발아래 바닥에서 접착종이가 붙여진 곳까지의 길이를 재도록 합니다.
- ⑤ 줄자의 수치를 설문지에 기록합니다.

(2) 몸무게

- 준비물: 체중계
- 측정방법
- ① 체중계를 편평한 바닥에 둡니다.
- ② 응답자의 옷차림은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하고, 신발은 벗도록 합니다.
- ③ 응답자를 바르게 세우고 체중계는 면접원이 볼 수 있도록 둡니다.
- ④ 체중계의 숫자가 0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후 0이 되면 응답자가 체중계에 올라서도록 합니다. 이때 균형을 잡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응답자가 체중계에 올라서는 것을 도와줍니다.
- ⑤ 응답자의 고개는 앞을 보고 허리를 곧게 편 바른 자세로 있게 한 후 체중계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 ⑥ 체중을 측정 후 응답자는 자리에 앉고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 ⑦ 응답자의 체중을 설문지에 기록합니다.

【문 C5】 영양관리 상태

노인이 적당한 영양 상태를 갖고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10개의 문항을 천천히 읽어주고 응답하도록 하고, 최대한 모른다(무응답)는 응답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현재 영양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 예, (2) 아니요로 응답을 받는다. 각 항목별로 영양관리 상태에 갖는 중요성이 다르므로, 실제 자료 분석시에는 ‘(1) 예’ 인 경우 문항에 따라 ①점~④점을 부여하도록 구성되었다.

현장 조사시 지난 1개월 동안의 영양관리 상태에 대하여 질문하고, 9)번은 지난 6개월 사이 의도하지 않은 체중의 변화(5kg 이상)가 있었는지 질문하도록 한다.

- 1) 질병(건강) 때문에 먹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바꾸고 있다는 경우는 질병 또는 건강상태(condition)으로 인하여 식단조절을 하는 경우임. <문 B3>의 만성질환 유무를 비교검토함
- 2) 하루에 채 두 끼를 못 먹는다는 경우는 한달간 평균 하루에 2끼 미만을 먹는 경우임.
- 3) 과일, 채소 또는 유제품(우유 등)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경우는 과일(채소)과 유제품(우유 등) 중 한가지라도 거의 먹지 않을 경우는 ‘(1) 예’ 에 해당됨
- 4) 거의 매일 3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에 ‘(1) 예’ 인 경우 문C2와 문B4와 비교검토함.
- 5) 치아가 좋지 않거나 입안이 헐어서 음식 먹기가 힘들다는 경우는 만성적인 상태를 의미함. ‘(1) 예’ 인 경우 <문 D3>과 비교검토함.
- 6) 돈이 부족해 필요한 음식을 구입 못할 때도 있다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임. ‘(1) 예’ 인 경우 <문 N1>과 비교검토함.
- 7) 거의 매번 혼자서 식사한다가 ‘(1) 예’ 인 경우 경우는 노인가구형태와 비교검토함.
- 8) 하루에 3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약(처방 및 비처방)을 복용한다가 ‘(1) 예’ 인 경우는 복합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로 문B3의 만성질환 유무를 비교검토함.
- 9) 지난 6개월 사이 의도적으로 체중을 조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는 문항에서 전·후의 체중을 전혀 모르는 경우는 ‘8 무응답’ 으로 기록함.

- 10)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식사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는 문항은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식사하기 등 3가지중 1개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1) 예’ 로 표시함. <문 D6-4>, <문 D7-3>과 비교검토함.

【문 C6】 건강검진 수진 여부(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년 간)

건강검진이란,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질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건강상태의 확인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항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신체계측(신장, 체중, 시력, 청력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구강검사 등이다.

【문 C7】 필요 의료서비스 미진료 여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으로, 필요했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던 적이 있는지 파악한다. 병의원에는 보건(지, 진료)소, 한의원 등이 모두 포함 된다. 본 문항에서 의료서비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치료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예방접종, 조기검진, 건강검진 등),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미진료 이유는 경제적 이유, 시간 부족, 교통 불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가 포함된다.

【문 C8】 치과 미진료 여부

응답자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치과진료를 받아야 했지만, 원하는 때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치과진료에는 치료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구강검진, 예방치료 등)가 모두 포함한다. 치과진료는 정기 구강검진, 예방치료(실런트, 불소도포 등), 스케일링, 충치치료(치아충진), 치통(신경치료), 발치 혹은 구강내 수술, 보철문(틀니) 제작 및 수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미진료 이유는 경제적 이유, 시간 부족, 교통 불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가 포함된다.

D.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문 D1~문 D3】 시력, 청력, 씹기를 위한 보조기 사용여부 및 불편함

일상생활에 장애 정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각 항목별 보조기 사용 여부와 보조기 착용 시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묻는다. 보조기 착용시 불편함을 응답자의 주관적 상태로 파악한다.

【문 D4】 근력 상태

노인의 근력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일반적인 의자(높이 40cm~50cm)에서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5회 반복하도록 한다. 이때 양손을 앞으로 모아 두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기를 시행하도록 한다.

가정 내에 의자가 없을 경우 침대나 해당 높이의 물건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만약에, 신체장애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외상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행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음으로 체크하고, 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의사에 의해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일어서는 동작을 하지 않도록 지시받은 경우도 ③수행하지 않음으로 체크한다.

【문 D5】 신체기능

노인의 전신의 근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1번부터 천천히 읽어주면서 노인이 느끼는 어려움 정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문 D6】 일상적 수행능력

자립으로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응답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시키거나 타인이 해주는 경우는 자립으로 간주한다.

문D6-1. 옷입기	옷을 챙겨 입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옷을 옷장이나 서랍, 옷걸이에서 꺼내 챙겨 입고, 단추나 지퍼, 벨트를 채우는 것
(1) 완전 자립	도움 없이 혼자서 옷을 옷장이나 서랍 등에서 꺼내어 입을 수 있다.
(2) 부분 도움	다른 사람이 옷을 챙겨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추, 벨트, 지퍼를 잠그는데, 도움을 받는 등 부분적 도움을 받아야 옷을 입을 수 있다.
(3) 완전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혀 옷을 입을 수 없다.

문D6-2. 세수, 양치질, 머리 감기	세수, 양치질, 머리 감기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세수는 얼굴에 물을 묻히는 정도도 괜찮음
(1) 완전 자립	세 가지 모두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
(2) 부분 도움	세수 또는 양치질은 혼자 할 수 있지만 머리감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할 수 있다.
(3) 완전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머리감기 뿐 아니라 세수나 양치질을 할 수 없다.

문D6-3. 목욕 또는 샤워하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하거나, 욕조에 들어가지 않고 물수건으로 때 밀기, 샤워(물 뿌리기) 등을 모두 포함
(1) 완전 자립	도움 없이 (혼자서 욕조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고) 때 밀기와 샤워를 할 수 있다.
(2) 부분 도움	샤워만 혼자서 할 수 있거나 몸의 일부를 닦을 때만 (등은 제외) 도움이 필요하다.
(3) 완전 도움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욕조 출입과) 샤워와 때밀기를 혼자서 하지 못한다.

문D6-4. 차려놓은 음식 먹기	차려놓은 음식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음식이 차려져 있을 때 혼자서 식사할 수 있는 능력
(1) 완전 자립	도움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다.(젓가락은 사용하지 못하나, 포크나 숟가락을 이용해서라도 먹는 것을 포함한다)
(2) 부분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선을 발라먹거나 음식을 잘라먹을 수 있다.
(3) 완전 도움	혼자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거나 튜브 혹은 정맥주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 받는다.(숟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해도 음식을 대부분 흘리는 경우도 포함한다.)

문D6-5. 누웠다가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누웠다가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까?
(1) 완전 자립	도움 없이 혼자서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무언가를 잡고 나오거나 지팡이,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해도 무관하며, 기어서 나오더라도 방밖으로 혼자서 나올 수 있으면 해당된다.
(2) 부분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축을 받으면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3) 완전 도움	들 것에 실리거나 업혀야만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문D6-6.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을 본 후 닦고 옷 입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을 본 후에 닦고 옷 입기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까?: 화장실을 출입하는 것과 대소변을 본 후에 닦고 옷을 입는 것
(1) 완전 자립	도움 없이 혼자서 화장실에 가고 대소변 후에 닦고 옷을 입을 수 있다. 지팡이, 보행기 혹은 휠체어를 사용해도 되지만 스스로 실내용 변기를 비울 수 있어야 한다.
(2) 부분 도움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
(3) 완전 도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문D6-7. 대소변 조절하기	대변이나 소변을 흘리지 않고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까?: 대소변을 옷에 싸거나 하지 않고 참거나 적절하게 보는 것
(1) 완전 자립	대변과 소변을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화장실 가기에 문제가 있어서 실내에서 보더라도 대소변을 잘 가리거나, 카테터(도관, 장루)를 본인이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2) 부분 도움	대변이나 소변 조절을 가끔 실패할 때가 있다.(속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있음): 소변조절 실패가 하루 1회 정도 이거나, 대변조절 실패가 주 1회 정도인 경우가 해당된다.
(3) 완전 도움	대변이나 소변을 전혀 조절할 수 없다.

【문 D7】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문D7-1. 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발톱 깎기)	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발톱 깎기)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완전 자립	(기구만 준비되어 있으면) 도움 없이 혼자서 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등을 할 수 있다.
(2) 부분 도움	(기구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한두 가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다.
(3) 완전 도움	(기구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모두 할 수 없다.

문D7-2. 집안일(실내 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 정리정돈 등)	집안일(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 정리정돈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까?
(1) 완전 자립	도움 없이 혼자서 집안일을 할 수 있다.
(2) 부분 도움	걸레질은 못해도 빗질은 할 수 있거나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설거지나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경우, 가벼운 이불은 개지만 무거운 것은 깎 수가 없거나, 장롱에 올려놓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3) 완전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집안일을 전혀 할 수 없다.

문D7-3. 식사준비 (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상을 차리는 것)	식사준비(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상을 차리는 것)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까?
(1) 완전 자립	도움 없이 혼자서 식사준비를 할 수 있다.
(2) 부분 도움	음식재료만 다른 사람이 준비해주면 할 수 있거나, 밥은 혼자 할 수 있으나 반찬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3) 완전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식사 준비를 전혀 할 수 없다.

문 D7-4.빨래(손으로 혹은 세탁기로 세탁한 후 늘어 말리는 것을 포함)	빨래(손으로 혹은 세탁기로 세탁한 후 늘어 말리는 것을 포함)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까?
(1) 완전 자립	도움 없이 혼자서 빨래를 할 수 있다.
(2) 부분 도움	큰 빨래는 못해도 속옷이나 양말 정도는 빨 수 있거나, 빨래는 하지만 널 수 없는 경우 해당된다.
(3) 완전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혀 할 수 없다.

문 D7-5.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을 혼자서 챙겨 드실 수 있습니까?
(1) 완전 자립	도움 없이 혼자서 제 시간에 필요한 용량을 챙겨 먹을 수 있다.
(2) 부분 도움	필요한 양의 약이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면 제 시간에 혼자 먹을 수 있다.
(3) 완전 도움	약을 먹을 때마다 사람이 항상 챙겨주어야 한다.

문 D7-6. 금전관리(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금전관리(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까?
(1) 완전 자립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금전 관리를 할 수 있다.
(2) 부분 도움	용돈 정도의 금전 관리는 할 수 있으나 큰 돈 관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3) 완전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금전관리를 전혀 할 수 없다.

※ <문 D7-6>의 금전관리의 정의는, 본인이 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즉, 은행에서 은행원이 돈을 넣어주고 빼주는 것 등의 업무는 <문 D7-6>에서 말하는 금전관리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본인이 ‘얼마가 필요하다’, 혹은 ‘얼마를 저축해 달라’ 와 같이 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1)완전 자립으로 보면 된다.

※ 현금 입출금 등의 당연한 은행 업무를 하는 은행원은 <문 D8> 및 <문 D8-1>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 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문D7-7. 근거리 외출하기(가까운 거리 걸어서)	걸어서 다녀 올 수 있는 가까운 상점, 관공서, 병원, 이웃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다녀오실 수 있습니까?
(1) 완전 자립	도움 없이 혼자 외출을 할 수 있다. 외출할 때 지팡이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해도 무관하다.
(2) 부분 도움	휠체어를 태워주는 등의 부분적 도움을 받으면 외출할 수 있다.
(3) 완전 도움	전혀 외출을 할 수 없다.

문D7-8. 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사야할 물건을 결정하고 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까?
(1) 완전 자립	도움 없이 혼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2) 적은 부분 도움	한두 가지 물건은 혼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3) 많은 부분 도움	다른 사람이 항상 동행해 주어야 물건구입이 가능하다.
(4) 완전 도움	혼자서 물건구입을 전혀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다주어야 한다.

문D7-9. 전화 걸고 받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거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까?
(1) 완전 자립	어떠한 전화번호라도 혼자서 찾고 전화 걸 수 있다.
(2) 적은 부분 도움	알고 있는 전화번호 몇 개만 걸 수 있다.
(3) 많은 부분 도움	전화는 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걸어주어야 한다. 걸지는 못한다.
(4) 완전 도움	전화를 걸지도 받지도 못한다.

문D7-10. 교통수단 이용하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버스, 전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차를 몰아 먼 거리를 다녀올 수 있습니까?
(1) 완전 자립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거나 직접 차를 운전할 수 있다.
(2) 적은 부분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버스나 지하철은 이용할 수 있다.
(3) 많은 부분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
(4) 완전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교통수단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

【문 D8】 수발여부

<문 D6>과 <문 D7>를 통틀어서 ‘(2)부분도움’ 혹은 ‘(3)완전도움’ 이 1개라도 나오는 경우, <문 D8>과 딸린 문항을 물어 봐야 한다. 단, <문 D6>과 <문 D7>를 통틀어 (2)부분 도움이나 (3)완전 도움(<문 D6>의 경우), (2)적은 부분 도움 (3)많은 부분 도움, (4) 전혀 할 수 없음(<문 D7>의 경우)이 단 한개도 나오지 않았다면 비해당이므로 <문 D9>로 이동한다.

일상생활(이상의 항목들을 수행 : 신체수발, 가사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수발을 받고 있는가를 질문한다. (4) 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문 D9> 및 <문 D9-1>과 연결하여 확인한다. (5)노인돌봄서비스는 <문 D9>에서 (6)등급외를 받았는지를 연결하여 확인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등급외’ 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문 D8-1】 도움제공자

도움을 제공하는 도움제공자로는 가족원(동거, 비동거 모두 포함), 친척, 이웃·친구·지인과 같은 비공식관계망, 개인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파출부)와 같은 민간 유급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나 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의한 요양보호사와 같은 공적 유급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수발자 각각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수발행태의 복잡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공적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로부터의 도움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종합돌봄서비스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잘 구분하여야 한다.

【문 D8-2~D8-2-1】 가족도움 정도

한편 가족원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경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별첨1> ‘노인과의 관계’ 를 참고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일주일동안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보기를 참고하여 기록한다.

【문 D8-3】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신체적인 기능상의 제한이 있지만(<문 D6>과 <문 D7>에서 부분 도움 이상인 경우)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문 D9】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여부

모든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경험을 묻도록 한다.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에 제한이 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급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문 D9-2>로 간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문 D9-1】 최근 장기요양등급

등급인정 신청을 한 경우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 제한 정도에 따라서 1, 2, 3, 4 등급 및 치매특별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신청자의 경우 이 외에도 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종합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또한 등급신청자에 대한 각하, 기각 등의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7) 기타로 기록하도록 한다.

※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화된다. 기존 3등급은 3등급과 4등급으로 분리된다(6월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새로운 등급발송예정). 치매그별등급은 기존의 등급외자중 치매자에 대한 신규 등급이다.

【문 D9-2】 등급인정 미신청 이유

등급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0)기능상 제한이 없는 경우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등급인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미리 판단하거나, 등급인정을 받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문제, 서비스의 질 문제, 가족 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등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반영하는 각 선택지를 참고하여 기록한다.

E.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

【문 E1 ~ 문 E1-1】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실태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을 했는지 질문한 후, (1) 예(여가문화활동을 함)라고 응답하면 <문 E1-1>에서 구체적으로 여가문화활동 종류를 최대 3가지까지 파악한다. 여가문화활동 목록은 <별첨7> ‘여가문화활동목록표’에서 해당번호를 찾아 그 번호를 기록한다. 만약 ‘(2) 아니오(여가문화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하면 <문 E1-1>, <문 E1-2>는 각각 ‘9, 99, 999 비해당’ 처리하고 <문 E2>로 이동한다.

【문 E1-2】 지난 1년간 여행 여부 및 여행 횟수

<문 E1-2>에서 지난 1년간 여행하신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만약 (1) 있다면 <문 E1-2>에서 국내 여행 횟수와 국외 여행 횟수를 파악한다(예: 국내 03회, 해외 00회). (2) 여행하신 적이 없다면 국내 ‘99’, 해외 ‘99’로 기록한다.

【문 E2~문 E2-3】 평생교육 참여 실태

지난 1년간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1) 예(참여)라고 응답하면 <문 E2-1>에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문 E2-2>에서 교육기관, <문 E2-3>에서 참여빈도를 파악한다. 평생교육에 (2) 아니오(참여하지 않음)라고 응답한 경우는 <문 E2-1>, <문 E2-2>, <문 E2-3>을 모두 ‘9 비해당’ 처리한다.

※ 평생교육법에서 정의된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시설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생애교육이라고도 하며 각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노인 대학 등을 포괄하고 있다. 즉, 구청 등에서의 노인을 위한 교육강좌나 민간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강좌 등을 포괄하여 ‘평생교육’으로 정의한다.

※ 평생교육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교실이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 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되고 있다. 그 운영주체는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종교기관 등 다양하다.

- ①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노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②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한다.
- ③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대학)

※ 노인교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주로 종교단체(교회, 성당 등)나, 대한노인회, 개인이 운영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노인교실(노인지도자대학, 노인대학,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운영.

- ④ 종교기관 운영 노인교실(대학): 절, 교회, 성당 등에서 노인교실 등 노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⑤ 시·군·구민 회관 및 동·읍·면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 공연, 집회의 목적으로 지은 시설
- ⑥ 초·중·고·대학교 부설의 평생교육원: 대학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좌(사회문화교실) 등을 개설하는 시설

- ⑦ 공공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 문화예술회관: 예술작품의 전시·공연을 목적으로 지은 시설이고, 문화의집(청소년회관)은 지역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문화예술체험의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예산지원으로 설치된 시설이며, 문화원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향토문화 또는 특정국가의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시설. 여성회관은 여성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지역여성복지기관이자 지역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여성발전센터, 여성발전연구원 등으로도 불림
- ⑧ 사설 문화센터: 개인 또는 기업체(백화점, 마트, 신문사, 방송사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좌 등을 개설한 시설
- ⑨ 그 외 평생교육기관으로 대학교 부설의 평생교육원, 보건소, TV(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및 라디오 등 방송매체가 있을 수 있다.

【문 E3~문 E3-1】 단체활동 실태

동호회(클럽),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등 각각 단체활동의 참여 여부를 파악하고, 만약 (1) 참여한다면 <문 E3-1> 참여빈도를 파악한다. (2) 참여하지 않는 경우 (<문 E3>의 응답이 (2))는 <문 E3-1>를 ‘9 비해당’ 처리한다.

본 조사에서 동호회(클럽)는 취미활동 등을 주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임(동호회 예시 참조)이며 노인들이 스스로 만든 자조모임, 동아리 등도 포함된다. 친목단체는 동창회, 계모임 등 사교 목적의 모임이며, 정치·사회단체는 정치활동이나 시민참여활동을 위한 사회단체로 정의한다(단, 통반장은 정치사회단체 활동이 아님).

【동호회(클럽) 예시】

- 1) 운동(스포츠) 동호회
- 2) 문학(독서 포함) 동호회
- 3) 미술(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등) 동호회
- 4) 서양 음악(클래식, 서양악기 등) 동호회
- 5)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등) 동호회
- 6)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동호회
- 7) 연극(뮤지컬 포함) 동호회
- 8) 영화(비디오 포함) 동호회
- 9) 대중가요, 연애(방송 프로그램 포함) 동호회
- 10) 역사문화유산 동호회
- 11) 기타 여행 동호회 등

【문 E4】 기부 및 다른 사람돕기, 자원봉사 경험 유무(지난 1개월 간)

노인의 나눔문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개월 동안 기부, 다른 사람돕기,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질문한다.

- 1) 기부: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부에는 ARS 등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 직장(기업)을 통한 후원, 구세군 기부, 적십자회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종교헌금(십일조, 보시), 헌혈, 정치후원금, 노조비 등은 기부에서 제외된다.
- 2) 다른 사람돕기: 가족친척·친구·이웃 등을 제외하고,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가없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움의 유형에는 현금이나 현물 제공, 식사대접, 길 알려주기, 설거지나 청소 등 집안 일 도와주기, 말벗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교회에서 설거지, 교인에게 식사서비스, 한턱내기는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들 간의 도움이므로 제외된다. 경비원이 택배 짐을 옮겨 주는 것 또한 본연의 업무에 해당되므로 제외된다.
- 3) 자원봉사활동: 아래 <문 E5>를 참조하시오.

【문 E5】 자원봉사 경험 유무(전 생애)

자원봉사활동이란 무료 자원봉사활동뿐 아니라 교통비 및 식비 등 기본적인 활

동비용을 지원받는 자원봉사활동도 포함한다. 정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은 노인들의 경륜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봉사기회를 확대하고, 최소한의 실비 지원을 통하여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활성화하며, 노인들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참여감과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정부기관 직접수행,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시설에서 수행, 노인단체 및 사회복지 단체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노인자원봉사 활동으로는 경로식당 봉사활동,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말벗서비스, 노인복지시설(양로, 요양시설 등) 봉사활동,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 등이 있다.

(1) 현재 하고 있는 경우 <문 E5-1>로 이동하며, (2) 경험은 있으나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경우와 (3) 전혀 경험이 없는 경우는 <문 E6>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자원봉사에 현재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문 E5>의 응답이 (2) 또는 (3))는 <문 E5-1> ~ <문 E5-4> 모두 '9' 로 기록한다.

【문 E5-1】 자원봉사 분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분야에 대하여 파악한다. 자원봉사활동은 대상과 영역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활동 장소(사회복지관 및 시설, 지역사회, 국제사회 등), 활동 영역(사회복지, 보건의료, 교통 및 환경, 교육 및 문화예술 등), 봉사대상자(노인,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부녀자, 부랑인 등 주로 사회복지대상자),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직접봉사, 모금, 수집활동, 상담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봉사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분야(장애인, 아동, 노인봉사 등), 문화, 체육 분야(박물관,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 교통질서(안전 지킴이, 기초 질서 캠페인 등), 환경보호(환경 정비 활동, 재활용 운동 등), 보건, 의료분야(의료봉사, 호스피스 활동 등), 교육활동(강의, 방과 후 교실, 도서관 지원 등) 등을 선택지로 제시하였으며, 이외의 영역을 응답한 경우 '기타' 로 기록하고 자세한 내용을 기술한다.

【문 E5-2】 자원봉사 유형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유형에 관한 질문이다. (1)은 단순한 노력 봉사활동은 거리에서 쓰레기 줍기, 청소 등과 같이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말한다. (2)와 (3)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도의 자원봉사를 말한다. 그러나 (3)은 전문성

을 활용한 것이므로 ‘직업, 자격증, 전공 또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야와 관련된 활동’이다. 다시 말해 (3)은 (2)에 비해 지식과 기술 수준의 객관성이 직업경력 또는 자격증을 통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E5-3】 자원봉사 빈도

자원봉사 활동을 얼마나 자주 수행하고 있는지 그 빈도를 묻는 질문이다. 노인이 일 년에 한두 번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할 경우, 이는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문 E5>로 돌아가 현재 자원봉사 활동 수행 여부에 대한 응답을 정정하도록 한다.

【문 E5-4】 자원봉사 활동 연계기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어떤 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지 기입한다.

【문 E6】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실태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부터 사용할 줄 알기는 하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문 E7~E7-1】 핸드폰 소유 여부 및 기능·서비스 이용실태

핸드폰의 종류(일반, 스마트폰)를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만약 (1) 스마트폰이나 (2) 일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문 E7-1>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핸드폰 기능 또는 서비스에 대해 파악한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면 <문 E7-1>을 ‘9’로 기록한다.

【문 E8】 종교 여부

응답자가 종교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종교 활동 참여와 무관하게 응답을 받는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없음 중 선택하며, 기타일 경우 직접 기입한다. 그 외의 다양한 종교는 기타에 자세히 기록한다. 꼭 절, 교회, 성당에 다니지 않아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종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문 E9】 향후 희망 사회참여 활동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득활동(일), 자원봉사활동, 학습활동, 취미여가활동, 종교활동, 정치사회단체활동, 친목단체활동의 7가지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 앞으로 희망하는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5점 척도로 파악한다. 여기서 (2)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과 (3)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는 노인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 또는 의지가 있는 것이며, (3)은 수동적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제반 여건들이 가능할 때에만 참여할 의사(의지)가 있는 것이다.

【문 E10~ 문 E10-4】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용 실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대해 각각 그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지역에 따라 시설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기도 한다(예: 대도시의 경우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사용).

지난 1년 동안 경로당, 노인복지관의 이용여부를 파악하고 (1) 이용하였다고 응답하면 <문 E10-1>에서 1주일 이용 일수, <문 E10-2>에서 이용 이유, <문 E10-3>에서 이용만족도, <문 E10-4>에서 불만족 이유를 질문한다. 이용 빈도가 주1회 미만의 경우는 '0' 으로 기록한다.

농어촌지역 노인의 경우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노인여가시설의 주당 이용 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여가시간이 많아지는 농한기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2) 이용하지 않았다면 <문 E10-1>~<문 E10-4>는 모두 '9' 로 기록한다.

【문 E11】 경로당, 노인복지관 향후 이용 의향

향후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각각의 시설에 대해 모두 질문한다.

F. 경제 활동

【문 F1】 노인의 현 취업여부

노인이 현재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조사시점으로부터 1주일 기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가 취업으로 간주된다.

- ①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문 F1-1>~<문 F1-10>을 질문한다.
 - ①-1) <문 F1-10>에서 응답이 (1)이면 (즉 현재 일이 최장기 직업이면)
 - <문 F1-1> ~ <문 F1-9>을 참고하여 <문 F2-1>~ <문 F2-3>을 질문하여 기록하고, <문 F2-4>와 <문 F2-5>는 ‘9, 99 비해당’ 처리한다.
 - 또한 <문 F3>의 딸린 질문(<문 F3-1>~ <문 F3-4>)은 ‘9, 99, 999 비해당’ 처리하고 <문 F4>를 질문한다.
 - ①-2) <문 F1-10>에서 응답이 (2)이면(즉 질문에서 현재 일이 최장기 직업이 아니면)
 - <문 F2-1>부터 <문 F2-5>까지 질문한다.
 - 2)-1: <문 F2-5>에서 응답이 (1)이면(즉 최장기직업 퇴사 이후에 근로활동을 한 적이 있는 노인이면)
 - <문 F3>의 딸린 질문(<문 F3-1>~ <문 F3-4>)을 질문 한 후 <문 F4>로 간다.
 - 2)-2: <문 F2-5>에서 응답이 (2)이면(즉 최장기직업 퇴사 이후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없는 노인이며)
 - <문 F3>의 딸린 질문(<문 F3-1>~ <문 F3-4>)은 ‘9, 99, 999 비해당’ 처리하고 <문 F4>를 질문한다.
- ② 과거에는 일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문 F1-1>~ <문 F1-10>은 ‘9, 99, 999 비해당’ 처리하고 <문 F2>의 딸린 항목(즉 <문 F2-1>~<문 F2-5>)을 질문한다.
 - ②-1) <문 F2-5>에서 응답이 (1)이면(즉 최장기직업 퇴사 이후에 근로활동을 한 적이 있는 노인이면)
 - <문 F3>의 딸린 항목(즉, <문 F3-1>~<문 F3-4>)을 질문 하고 <문

F4>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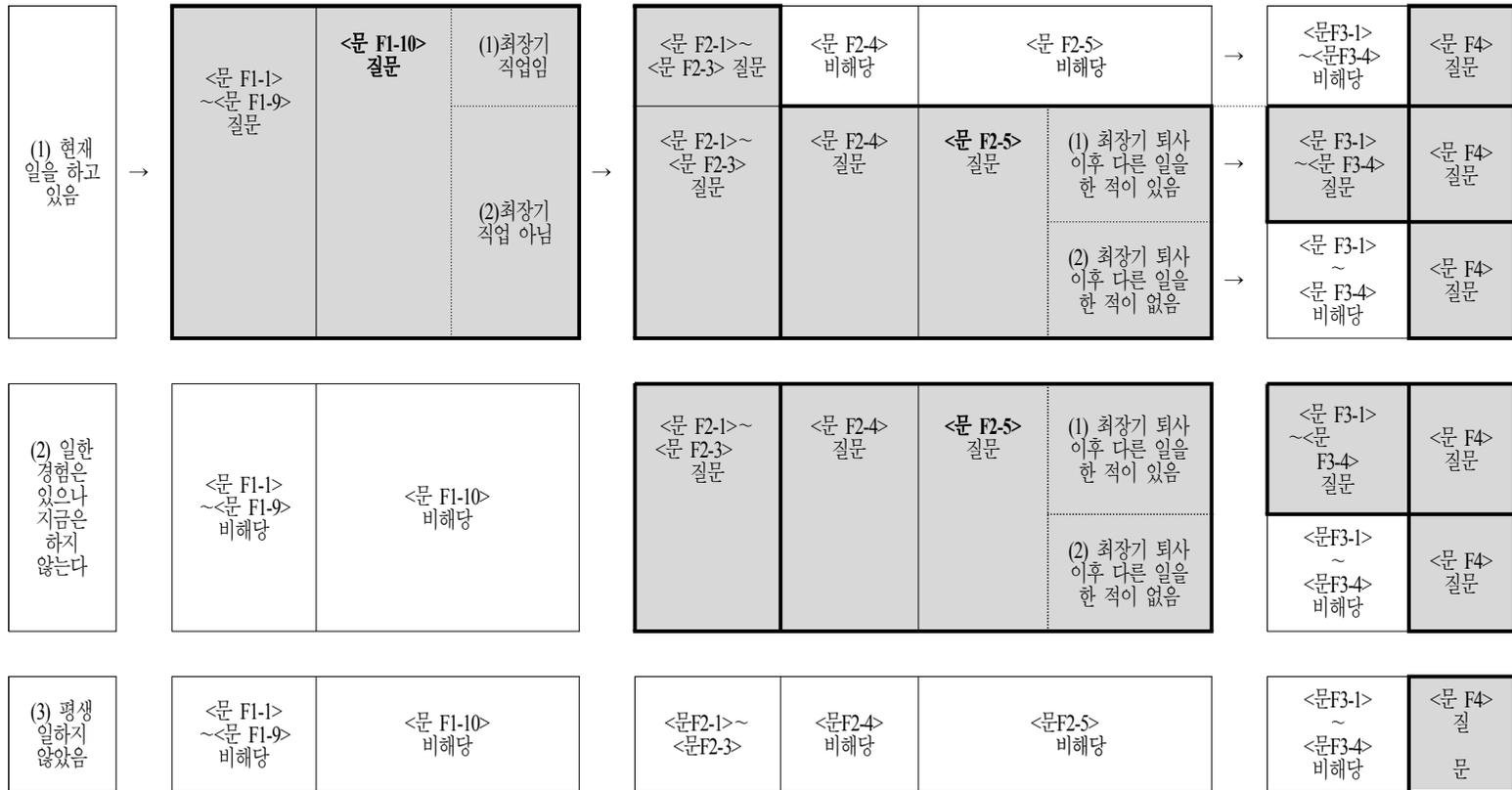
②-2) <문 F2-5>에서 응답이 (2)이면(최장기직업 퇴사 이후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없는 노인이면)

→ <문 F3>의 딸린 질문(즉, <문 F3-1>~<문 F3-4>)을 ‘9, 99, 999 비해당’ 처리하고 <문 F4>를 질문한다.

③ 평생 직업 없음으로 답한 경우는 <문 F4>로 간다. 그 경우 <문 F 1-1>~<문 F3-4>까지 ‘9, 99, 999 비해당’ 처리한다.

이러한 질문 진행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 경제활동 질문 진행순서도



【문 F1-1】 현 취업자 직업분류

현재 취업중이라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직위나 직명 등은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하며, <별첨8>의 ‘직업분류표’를 참조하여 직업을 분류한다.

【문 F1-2】 현 취업자 일의 내용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의 분류는 아래를 참고한다.

- (1) 농림어업 : 논이나 밭, 과수원, 농장, 어업, 축산 등
- (2) 경비·수위·시설관리: 경비원, 주차관리, 공원/놀이터 관리, 안내원, 매표원 등
- (3) 청소: 건물청소, 병원, 공공기관 등 청소 및 길거리/공원 등에서 쓰레기 줍기 등
- (4) 생산작업: 공장 생산업무, 재활용품 분류, 포장, 공동작업장 등
- (5) 가사·돌봄: 가정도우미, 간병인, 요양보호사, 베이비시터, 보육교사 도우미, 보육시설 주방보조, 급식도우미, 노노케어 등
- (6) 운전·운송: 택시, 트럭 등
- (7) 전문직: 부동산중개업, 교육, 강사, 법률, 의료, 전문상담, 통번역, 문화재 설명, 생태해설 등
- (8) 행정사무직: 사무보조, 도서관 관리지원 등
- (9) 조리·음식업: 주방보조원 등
- (10) 택배·배달
- (11) 현장관리: 단속, 감시, 안내 등
- (12) 환경·조경: 골프장, 공원, 학교 등에서 잔디 뽑기 등 조경 업무 담당
- (13) 건설·기계: 건설현장에서 일하거나 기계나 중장비 운전(포크레인, 크레인 등), 기계 수리 등
- (14) 문화예술
- (15) 공공질서: 지하철, 주차 관리, 스쿨존 교통지원, 자전거 보관 및 수리 등
- (16) 폐휴지수거
- (17) 기타: 주유원, 시험감독관, 주례사, 바리스타 등

【문 F1-3】 현 취업자 종사상 지위

종사상의 지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상용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

는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2) 임시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사람

예)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의 경우, 임시근로자에 해당

3) 일용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 대가를 일급이나 일당제로 받는 사람

예) 건설노무자, 파출부 등 그때그때 일을 얻거나 호출되어 일을 수행하여 일급 또는 일당제로 급여받음

4) 고용주: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5)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예) 개인사업자, 작가 등 예술인, 농부, 어부, 행상, 노점상, 프리랜서 등

6)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따로 살아도 됨)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일하는 사람

7) 기타: 1)에서 6)까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직업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판단)하지만 종사상의 지위가 변했을 경우 현재 상태를 반영하여 기록

【문 F1-3-1】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시니어 인턴십, 사회공헌일자리(고용노동부) 등과 같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인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문 F1-4】 현재 일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장소를 확인한다.

(1) 사업체 아님: 농림어업에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 (2) 개인사업체(가게): 개인이 회사 등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장에서 자영업자로 일하는 경우
- (3) 민간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 (4) 구청, 주민센터, 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 (5) 현재 일하고 있는 기관이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종교기관인 경우
비영리법인에는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단법인 등이 있으며,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인에 해당
- ※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이지만,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경우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지방정부에서 직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4)번을 체크하고,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에서 일하는 참여자는 (5)번을 체크
- (6)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폐휴지 줍기, 프리랜서, 개인택시, 지입차주, 특정조직이나 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간병인, 파출부 등 일부 자영업 성격을 갖는 일자리
- (7)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회사)에서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하는 경우

【문 F1-5】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의 근로 지속성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속성상 일반적으로 또는 평균적으로 일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의 일자리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계절에 따라 혹은 경제여건에 따라 근로지속성이 다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사 작물이나 비닐하우스 농사 여부 등에 따라 일년동안 근로 지속기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문 F1-6】 현 취업자의 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최근 1개월을 기준으로 주당 평균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록한다.

【문 F1-7】 현 취업자 일한 기간

현재의 직업에 종사한 기간을 년과 월 단위로 구분해 기재한다.

【문 F1-8】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기타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문 F1-9】 현재 일자리의 만족도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④만족하지 않은 편이다 및 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문 F1-9-1>의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다.

【문 F1-9-1】 현재 일자리의 불만족 이유

- (1) 낮은 급여(소득) 수준
- (2) 건강상태와 맞지 않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3) 불안정한 일자리: 계약기간이 없거나 계약기간이 짧음 등 일자리가 불안정함.
- (4) 근로시간: 원하는 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짧거나 긴 경우 모두 포함
- (5) 일의 내용이 교육수준, 경력, 적성 등과 맞지 않거나 원하는 업무가 아님
- (6)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 등

【문 F1-10】 현재 일자리의 최장기 일자리 여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이 생애동안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최장기 종사직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이때 일치여부는 직업 중분류에 기초한다. 단, 동일 직업이라도 종사상의 지위가 현재와 다른 경우는 반영하여 기록하다.

따라서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일자리인 경우 <문 F2-1>은 <문 F1-1>과 동일하다. 그러나 <문 F2-2>와 <문 F2-2-1>은 <문 F1-3>과 <문 F1-3-1>과 상이할 수 있다. 동일한 직업이어도 종사상의 지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일자리인 경우 <문 F2-3>은 <문 F1-7>의 응답내용을 이기하고 <문 F2-4>와 <문 F2-5>는 ‘9, 99 비해당’ 처리한다(예: 5년 전 사별한 평생 농사지은 할머니- 5년 전까지는 무급가족종사자였으나, 현재는 자영업)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이 생애동안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최장기 종사직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문 F2>의 딸린 항목을 모두 질문하여야 한다.

【문 F2-1】 최장기 일자리의 종사직종

최장기 일자리의 종사직종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현재 직업이 있으나 그것이 최장기 종사직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 중 생애동안 가장 오래 근로한 직종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 때 현재 직업과 최장기 종사 직업의 일치여부는 직업중분류표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이 질문은 현재 취업중이 아닌 노인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으로 과거에 종사했던 직업 중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취업중인 직업이 노인의 가장 오랫동안 종사해 온 직업이라면 ‘현재 직종’을 참조하여 직업을 기입하도록 한다. 평생 직업을 갖지 않은 경우는 비해당 ‘99’로 처리한다.

【문 F2-2】 최장기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문 F1-3>의 내용 참조

【문 F2-2-1】 최장기 일자리의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과거에 가장 오래 근무했던 일이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과 같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인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문 F2-3】 최장기 종사직종 근로기간

가장 오래 근무했던 일의 근로기간을 년과 월 단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문 F2-4】 최장기 종사직종 그만둔 이유

가장 오래 근무했던 일을 그만둔 사유를 묻는 질문이며, 기타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5)와 (7)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근로조건 및 환경: 근로시간, 급여수준, 직장 복지수준 등

(7) 일할 필요가 없어서: 생활이 여유롭거나, 일 대신 여가생활이나 자아실현 등을 위해서 그만둔 경우

【문 F2-5】 최장기 직업 퇴사 이후 일한 경험

가장 오래 일했던 일을 그만둔 이후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록한다.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일한 적이 있으면 <문 F3-1>부터 응답하

고,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일한 적이 없으면 <문 F4>로 이동한다.

【문 F3-1】 최근 그만둔 직종 조사

가장 오래 일한 직장에서 그만 둔 이후 다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자리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게 된다.

【문 F3-2】 최근 그만둔 직종의 종사상 지위

<문 F2-2> 내용 참조

【문 F3-2-1】 최근 그만둔 직종의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문 F2-2-1> 내용 참조

【문 F3-3】 최근 그만둔 직종의 종사기간

<문 F2-3> 내용 참조

【문 F3-4】 최근 그만둔 직종의 그만둔 이유

가장 최근에 일을 그만둔 이유를 확인한다.

【문 F4】 일에 대한 희망여부

본 문항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과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 모두 해당되며, 앞으로 일을 (계속) 하고 싶은지 질문한다.

- (1) 앞으로 일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문 F5> 질문으로 진행하고, <문 F4-1>부터 <문 F4-5>까지 ‘9 비해당’ 처리한다.
- (2) 지금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현재 취업자에 해당하는 질문이며, <문 F4-5> 로 이동하고 <문 F4-1>부터 <문 F4-4>까지 ‘9 비해당’ 처리한다.
- (3)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현재 취업자에 해당하는 질문
- (4) 지금은 일하지 않으나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 현재 미취업자 대상 질문

【문 F4-1】 하고 싶은 일의 유형

현재 취업자 중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고 응답한 사람과 현재 미취업자 중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 고 응답한 사람에 대한 질문으로, 앞으로 어

편 일을 하고 싶은지 조사하는 문항이다.

취업을 원하는지, 창업을 원하는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지, 아니면 여가를 즐기면서 소일거리로 돈벌이를 원하는지 질문한다.

【문 F4-2】 희망 근로시간

희망하는 주 근로시간을 질문하여 기입한다.

【문 F4-3】 희망 월소득

희망하는 월소득을 질문하여 기입한다.

【문 F4-4】 구직활동 내용

본 질문은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 및 향후 일하고 싶은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구직을 위해 행한 구직활동 내용으로 가장 주요한 것 2가지만 기입하도록 한다. 한가지만 응답한 경우는 두 번째 박스에 ‘9 비해당’으로 기록한다.

【문 F4-5】 일을 하고 싶은 이유

앞으로 일을 하고 싶은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기타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문 F5】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노인일자리 사업을 참여해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문 F4-1>로 간다. 신청했으나 참여기회가 없었거나 아예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는 <문 F4-2>으로 가며 <문 F4-1>은 ‘9 비해당’ 처리한다.

【문 F5-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을 질문하며, 여러 종류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면 가장 최근에 참여한 혹은 현재 참여중인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을 기재한다.

참여유형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공동작업형과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이 있으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익형: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 예)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사업, 환경개선보호사업,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등
- ② 교육형: 전문성을 갖는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
- 예)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숲생태해설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등
- ③ 복지형: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 예)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 및 안부확인사업, 경로당 노노케어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등
- ④ 시장형(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 예) 공동작업형: 쇼핑백 제작, 제품포장 등, 콩이나 고사리 등 재배, 수공예품 공동제작 등
- 예) 제조판매형: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소규모 매장 및 점포운영, 택배, 세탁 등
- ⑤ 인력파견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예)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등

【문 F5-2】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다.

G. 경제 상태

【지도원 확인】

가구원 사항과 배우자의 조사여부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도록 한다.

- (1)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으로 배우자의 개인조사표가 완료되었으며, 본인 연수입만 질문하고 배우자의 연수입은 배우자 조사표에서 이기하도록 한다. 이는 본인이 직접 보고한 연수입의 정확성이 배우자를 통하여 파악된 것보다 정확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지만 배우자의 개인조사표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배우자를 통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조사 대상 노인에게 본인 연수입과 배우자 연수입을 모두 질문하도록 한다.
- (3)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으로 개인조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조사 대상 노인에게 본인 연수입과 배우자 연수입을 모두 질문하도록 한다.
- (4) 배우자 없는 경우는 본인 연수입만 질문하고 배우자 연수입은 비해당 처리하다.

【문 G1】 항목별 소득 유무 및 소득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금융·임대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사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공적급여, 기타 소득에 대하여 **작년 한 해 (2013.1.1-2013.12.31) 동안**의 액수를 조사하도록 한다. 각 항목별로 본인 및 배우자의 수입유무에 ‘(1)있다’로 응답하면 해당 항목의 액수(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를 연단위로 기록하고, ‘(2)없다’고 응답하면 액수는 ‘0’으로 기록한다. 배우자가 이혼·사별·별거 등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배우자로 간주하고 비해당 처리를 한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사항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해당 경우별로 처리하도록 한다.

- ①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응답자와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에 속해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도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표별로 배우자의 소득을 이기하도록 한다.

②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 배우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에 관한 내용은 응답자(노인)에게 질문하고 조사표에 기입하도록 한다.

③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에 대한 소득조사가 미완인 경우

- 응답노인에게 질문하도록 한다.

〈문 G1-1-1〉 근로소득

- 노인 본인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의 총액을 말한다.
- 퇴직수당(직장에서 퇴직하고 수령한 퇴직에 대한 보상, 예: 몇 개월 급여)은 포함되지만 **퇴직금은 (12) 기타소득**에 포함한다.
- ※ 퇴직금: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문 G1-1-2〉 사업소득

- 노인 본인이 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을 뜻한다.
- 농림어업소득, 애완견 분양, 텃밭 채소, 산과 들에서 나물채취 등 주업이 아닌 활동으로 얻은 소득, 작가의 인세, 작곡가 음원 등 저작권, 발명가의 발명안(案) **판매소득**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 주택, 건물 및 토지 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주택 등 임대소득은 (2)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재산소득에 포함시킨다.

※ 자영업자(영세사업자) 중 사업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가계소득으로 전입되는 부분을 소득으로 파악한다.

<문 G1-1-3>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 노인 본인이 소유한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 자본이득) 및 실물자산소득(임대소득)을 뜻한다.
- 이자소득은 금융회사에 맡긴 돈이나, 회사나 개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와 공사채 만기에 받은 이자(세후 이자) 등으로 예금적금이자, 공사채이자가 해당된다.
- 자본이득은 보험, 신탁, 주식 등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수익,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자산 투자에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

※ 개인연금, 즉시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수령한 금액은 금융소득에서 제외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서 별도로 응답하도록 한다. 여기서 즉시연금은 개인연금으로 간주한다.

- ① 개인연금: 보험료 불입을 전제로 한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연금보험상품과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연금신탁상품을 뜻한다.
- ② 즉시연금: 10~20년 동안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후 곧바로 매달 연금으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 ③ 퇴직연금: 근로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여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주식배당이 아닌 매매에서 얻은 소득(매매차익)은 재산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 포함시킨다.

- 임대소득은 주택 및 상업용 건물임대소득, 공장용지, 주차용지 등 각종 토지임대소득(논, 밭, 과수원 등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로 현물로 받은 경우도 포함), 자동차, 각종 가구류, 집기, 어선 등과 같은 유형자산의 임대소득, 광업권, 저작권, 인세 및 특허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 임대소득(예, 각종 자격증 대여소득 등)을 뜻한다.

※ 주택 등 임대소득은 재산소득에 포함하되,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2)사업소득에 포함시킨다.

<문 G1-1-4> 개인연금

- 노인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개인연금만이 해당되며, 보험료 불입을 전제 한 매달 지급되는 연금소득을 뜻한다. 단, 연금방식이 아닌 일시불로 수령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포함시킨다.

<문 G1-1-5> 퇴직연금

- 노인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퇴직연금만이 해당되며, 근로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단, 일시불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금포함)은 (12) 기타소득에 포함시킨다.

※ 명확한 연금제도는 아니나 성직자들이 은퇴 후 교단에서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 받는 돈은 퇴직연금으로 처리한다.

<문 G1-1-6> 주택연금·농지연금

-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동 제도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단, 일시적으로 한도를 정해서 목돈으로 인출하는 마이너스(-)통장은 제외하도록 하며, 주택연금·농지연금이 존재하는 경우 노인명의로 부채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문K1>의 입주형태에서 (1) 자가를 선택하지 않아도더라도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가이거나 살고 있는 집 이 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0' 이 되어야 한다.

①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이다.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1) 연령 요건: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공동으로 주택

을 소유 시에는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이면 된다.

- 2) 주택보유 요건: 부부기준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상속이 사 등으로 인한 2주택 보유자는 3년 내 처분조건으로 1주택 가입이 가능하다.
- 3) 대상주택 요건: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주택이 대상이다.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며,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된다.

※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명시된 주택으로서 ‘노인에게 주거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뜻한다.

※ 1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 ‘도시지역’ 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①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②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 받은 단독주택, ④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뜻한다.

② 농지연금: 2011년도부터 도입된 농지형 역모기지론이다.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종신형(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령)과 기간형(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령)의 2가지 수급방식이 있다.

- 1) 연령조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 2) 영농경력조건: 영농경력이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이어야 하고,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까지 계속/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한 것이 5년 이상이면 된다.
- 3) 소유농지조건: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2

인 이상 공동 소유 농지일 경우 부부 공동지분 이외의 지분은 제외한다.

- 4) 대상농지조건: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문 G1-1-7> 사적이전소득

- 동거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 친지, 이웃, 복지관이나 종교·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경제적 도움(현금, 현물 모두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연 총액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 애경사 등에 대한 경조소득은 <문 G1-12>의 기타소득에 포함시키지만 타 가구에서 매년 생일, 어버이날, 명절 등에 일정액을 보내오는 경우는 <문 G1-7>의 사적이전에 포함시킨다. 또한 동거가구간의 사적이전은 해당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문 G1-1-8>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사학·공무원·군인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 장애(상이)연금 • 유족연금

<문 G1-1-9> 기초노령연금급여(2013년 기준)

	2013. 1~2013. 3	2013. 4 ~ 2013.12
노인단독가구	월 20,000원 ~ 94,600원	월 20,000원 ~ 96,800원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월 20,000원 ~ 94,600원	월 20,000원 ~ 96,800원
노인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월 40,000원 ~ 151,400원	월 40,000원 ~ 154,900원

<문 G1-1-10> 국민기초보장생활급여(2013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1종2종의료급여, 보육료,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아파트, 각종감면제도 등의 제도적 급여 및 혜택이 있다.

※ **민감한 항목이므로 질문시 주의해야 한다.**

- 생계급여(예시)

<2013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A)	572,168	974,231	1,260,315	1,546,339	1,832,582	2,118,566	2,404,650
타 지원액(B)	103,715	176,595	228,453	280,310	332,167	384,025	435,882
현금급여기준 (C=A-B)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주거급여액(D)	90,636	154,327	199,645	244,963	290,281	335,599	380,917
생계급여액 (E=C-D)	377,817	643,309	832,217	1,021,126	1,210,034	1,398,942	1,587,85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 가구: 2,690,734원)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씩 증가(8인 가구: 2,202,994원)

<문 G1-1-11> 기타공적급여

보훈급여	고용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장애인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연금 • 각종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수당 • 휴업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해연금 • 유족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연금 • 경증장애/장애아동수당

- 근로장려세제급여,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 급여 등의 근로장려금,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체육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농어업정부 보조금은 기타공적급여에 포함된다. 특히 노인실태조사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6.25 참전용사 수당은 기타공적급여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 근로장려세제급여(2013년 기준, 2009년 시행)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에 한함)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 배우자 또는 18세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 부양자녀: 입양자 및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경제한이 없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총소득 요건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기준액>

부양자녀	없음	1인	2인	3인이상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70만원	140만원	170만원	200만원

□ 장애인연금(2013년 기준, 2010년 7월 시행)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경중)장애수당: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① 기초급여(18-64세)

- 단독가구: 2013.1월 ~ 2013.3월 → 월 20,000원 ~ 94,600원
2013.4월 ~ 2013.12월 → 월 20,000원 ~ 94,600원
- 1인수급 부부가구: 2013.1월 ~ 2013.3월 → 월 20,000원 ~ 96,800원
2013.4월 ~ 2013.12월 → 월 20,000원 ~ 96,800원
- 2인수급 부부가구: 2013.1월 ~ 2013.3월 → 월 40,000원 ~ 151,400원
2013.4월 ~ 2013.12월 → 월 40,000만원 ~ 154,900원

② 부가급여: 기초수급자(18-64세; 8만원, 만 65세+; 17만원)

- 차상위계층(18-64세; 7만원, 만 65세+; 7만원(14만원: 시행일이전 만 65세 차상위 장애수당수급자))
- 차상위초과자(18-64세; 2만원, 만 65세+; 4만원)

※ 장애인연금으로 연 25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응답할 경우 상이군경에게 지급하는 보훈연금이 아닌지 재확인이 필요하다.

<문 G1-1-12>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연말정산 환급금, 할인혜택(무료쿠폰 등) 등, 위에서 구분되지 않은 이전소득
- 경조소득, 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 제외) 등 일시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소득
- 자산변동으로 인한 소득: 예금인출, 보험금수취, 부동산매각, 영업권(권리금) 등 자산의 감소(매각)로 발생하는 매매차액.

※ 예: 적금 탄 금액, 유가증권 매각대금, 보증금회수, 부동산 매각대금 등

※ 주식배당이 아닌 매매에서 얻은 수입(매매차익)은 재산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 포함시킨다.

- 부채증가로 인한 소득(부동산매입을 위한 차입금, 할부 및 외상 등의 부채 증가)
-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자산을 타가구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문 G1-2-1> ~ <문 G1-2-12> 배우자의 연수입
- <문 G1-1-1> ~ <문 G1-1-12> 노인(응답자) 본인에 대한 설명과 동일하다.

<문 G1-1-13>, <문 G1-2-13>, <문 G1-1-14>

- <문 G1-1-13> 총소득은 <문 G1-1-1>~ <문G1-1-12>까지 모두 합산하며, <문 G1-2-13> 총소득은 <문 G1-2-1>~ <G1-2-12>까지 모두 합산한다. <문 G1-1-14>는 <문 G1-1-13>과 <문 G1-2-13>을 합해서 작성한다.

【문 G2】 경제상태

경제상태에 대한 질문은 민감한 항목이므로 질문시 주의하도록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1종2종의료급여, 보육료,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아파트, 각종감면제도 등의 제도적 급여 및 혜택이 있다.
- 2)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 대상자
 - 의료급여제도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제도로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1종) 또는 일부(2종)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종의료급여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이며 2종의료급여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로 생계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의료급여 대상자도 아닌 경우를 말한다.

【문 G3】 자산 및 부채현황파악

2013년 1년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소득과는 달리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는 것으로 노인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자산도 조사하도록 한다. 배우자의 경우 기간(소득은 2013년 1년, 자산 및 부채: 현재 기준)외에는 소득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문 G3-1-1> 부동산자산

- 조사시점인 현재의 시가를 기록하고 시가는 부동산을 현재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문 G3-1-1>은 노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차계약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가게나 사무실의 전세보증금도 포함한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만을 포함하며, 가게 등의 영업권(권리금)도 포함되며, 총합계액을 적어야 한다.

- ※ 선산이나 기타 가치가 모호하여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올 경우는 반드시 추정하는 가격(집을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옆의 집들이 팔렸다면 얼마정도 되었는데가라는 질문 등으로 그 가격을 추정하여 적는다. 이 경우 추정액이라는 것을 조사표 옆에 적는다)이라도 적어야 한다. 즉, ‘잘 모르겠음’ 을 쓰지 말고 시가화하여 적어야 한다.
- ※ 토지의 경우, 경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하고 있는 논, 밭, 임야 등의 농경지의 가격을 조사한다.

- ※ 응답자가 판단하는 시가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자료나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 ※ 소유여부는 법적인 소유기준이기 때문에 노인의 이름으로 된 집이 있거나 실 소유는 아들로 하고 월세는 아들이 받는 경우 <문 G3>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기록한다. 그러나 실제 노인이 월세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문 G11-3>의 본인의 연수입에서 월세가 재산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s://www.kais.kr/realtyprice>)
 - ☞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사이트(<http://www.onnara.go.kr>)

<문 G3-1-2> 금융자산

- 노인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저축금액, 대출한 금전, 민간보험회사 보험료 납부총액, 껌돈 불입금액(타지 않은 경우만 포함), 채권, 주식 등의 구입비용 등을 기입한다. 가구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상품권)도 금융자산에 포함시킨다.
- ※ 가계용과 사업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가계용으로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 ※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는 자녀가 부모의 명의로 보험(적금, 예금)을 들고 있을 경우 실수익자 기준으로 조사여부를 결정한다. 즉, 만기에 부모가 타서 사용한다면 해당되지만, 만기에 자녀가구에서 타서 사용한다면 해당금융재산은 '0' 이 된다. 실수익자를 모를 경우에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확인 요망)

<문 G3-1-3> 기타자산

- 기타자산은 노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을 제외한 기타실물자산으로 자영업자의 설비와 재고자산, 건설용과 농업용 장비, 동물과 식물, 자동차, 오토바이, 귀금속, 골동품과 예술품, 고가내구재(현시가 300만원 이상),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기타회원권 등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 등이 포함되며 현재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문 G3-1-4> 부채

- 노인 본인이 타인이나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기관(캐피탈), 사채(직장, 개인))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대출 받은 금전만을

기입한다. 단, 적금이나 납부한 보험료를 근거로 받은 대출금은 제외한다.

- ※ 수시로 상환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인에게 이자없이 빌린 돈도 부채에 포함하도록 한다.
- ※ 가계용과 사업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가계용으로 포함하여 조사한다.
- ※ <문 G1-1-6>에서 주택연금·농지연금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현재까지 받은 연금액을 부채로 계산한다.

<문 G3-2-1> ~ <문 G3-2-4> 배우자소유의 자산

- <문 G3-2-1> ~ <문 G3-2-4>은 <문 G3-1-1> ~ <문 G3-1-4>의 노인 본인과 동일하게 조사하도록 한다.

【문 G4】 월평균 소비지출액

지난 한 해(2013.1.1.~2013.12.31.)동안 노인 본인을 위해 (배우자를 위한 지출은 포함하지 않음)지출된 소비지출을 파악하는 질문으로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한다. 만일 노인이 지출이 ‘(1) 있음’ 이라고 응답했으나 금액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N. 가구지출에서 가구대표자에게 추가 확인하여 기입해야 한다.

<문 G4-1> 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 의약품, 외래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치과서비스 등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파스나 두통약에 지출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건강보험료는 제외하도록 한다.

<문 G4-2> 문화여가비

- 만약 노인 본인이 여행,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등의 여가문화활동을 하였다면, 이를 포함한 월평균 지출금액을 응답해야 한다. 여가문화활동을 위한 지출이 없었다면 ‘0’ 을 기록한다.

<문 G4-3> 경조사비(결혼식·회갑연·돌 등의 축하금, 조의금 등)

- 축의, 조의 등 다른 가구의 애경사 행사시 금전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노인 본인과 관련된 결혼식·회갑연·돌 등의 축하금, 조의금 등이 해당된다.

H.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형태

【문 H1】 비동거 자녀 수

현재 결혼이나 취업, 또는 교육 등의 이유로 노인과 따로 살고 있는 자녀의 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비동거 자녀의 수를 기록한다. 이때 비동거 자녀 수는 실수로 기록한다. 즉, 비동거자녀가 없으면 ‘00’으로 기록한다. 자녀의 성별, 결혼상태별로 자녀 수를 기록한다. 즉 비동거자녀가 모두 딸이면 남자 비동거자녀는 ‘0’, 비동거자녀가 모두 미혼이면 기혼은 ‘0’ 명으로 기록한다.

【문 H2~문 H2-1】 따로 사는 비동거 자녀(배우자 포함)의 왕래 및 연락빈도

왕래 및 연락빈도를 참고하여 기록한다

【문 H3~문H3-3】 가장 많이 접촉하는 비동거 자녀(배우자 포함)의 관계 및 거주지까지의 소요시간, 왕래 및 연락 빈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중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자녀의 형제자매 순위 및 성별을 파악하여 <별첨1> ‘노인과의 관계’를 참고하여 기록하도록 한다(<문 H3>). 또한 <문 H3-1>은 그 자녀와 만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는 곳까지의 거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선택지를 참고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접촉이 가장 많은 자녀의 선정기준으로는, 방문빈도나 연락빈도를 모두 고려하여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질문하도록 한다.

별거자녀가 전혀 없는 경우나 별거자녀가 있기는 하지만 접촉하는 별거자녀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문 H3-1>과 <문 H3-3>을 ‘99 비해당’ 처리한다.

※ 별거 자녀의 범위 : 딸이 사망한 비동거 사위, 아들이 사망한 비동거 며느리와 접촉을 하고 있는 경우도 별거자녀에 포함한다.

이어 해당자녀의 왕래 및 연락빈도를 보기를 참조하여 기록한다.

【문H4, 문4-1】 자녀와의 갈등

세대차이 및 욕구의 차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항상 우호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질문을 통하여 자녀와의 갈등경험 여부 및 갈등 원인과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자녀를 파악하도록 한다.

갈등을 일으키는 자녀가 많거나, 경우에 따라 자녀와의 갈등 원인이 다를 경우 가장 빈번한 갈등을 경험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가장 심각한 갈등 원인을 파악하도록 한다.

【문 H5~ 문H5-2】 비동거 손자·손녀 여부 및 왕래 및 연락빈도

노인 본인의 비동거 손자손녀를 질문한다. 손자손녀는 친·외 손자손녀, 의붓 손자손녀를 모두 포함한다. 비동거 손자녀 여부를 확인하고, 비동거 손자녀가 없으면 비동거 자녀 수는 ‘0’ 으로 기록한다.

이어 왕래 및 연락빈도를 보기를 참조하여 기록한다.

【문 H6】 배우자의 건강

<문 H6> ~ <문 H10-1>은 배우자에 대한 질문이다. 노년기의 삶에서 배우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관한 질문이 강화되었다.

<문 H6>은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으로 노인이 유배우 상태인 경우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문 H6> ~ <H10-1>은 비해당⑨ 처리한다.

【문 H7】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빈도

부부동반 외출은 부부가 운동, 등산, 영화관람 등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말하며,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종교의례(예배나 법회 참여)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부부 이외의 자녀 또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가족 동반 외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문 H8-1)~3)】 배우자와의 고민상담(정서적 도움), 청소·식사준비·세탁(도구적 도움), 간병·수발·병원 동행 도움의 교환

노인이 배우자와 어떠한 종류의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정서적인 부양으로는 걱정거리나 문제점 등을 상담하는 것, 도구적인 부양으로는 청소, 식사준비(장보기, 반찬제공 등 포함)를 파악한다. 세탁·간병·수발·병

원 동행 등의 도움에 대해서도 받았는지와 주었는지를 각각 질문하도록 한다.

【문 H9】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으로 충분한 대화와 신뢰도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응답을 받도록 한다.

【문 H10~ 문H10-1】 부부갈등

배우자와의 갈등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으로 지난 1개월간 부부간의 말다툼 또는 말을 하지 않는 갈등이 있었는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이 다양하다면 응답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큰(응답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심각한) 갈등의 원인을 기록하도록 한다. 또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다수라면 가장 빈번한 갈등의 원인을 기록하도록 한다.

【문 H11~문 H12】 노인단독가구 형성 기간 및 단독가구 생활 이유

노인이 혼자 또는 배우자와만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질문하도록 한다. 그 외의 경우는 <문 H11>~<문 H13>은 비해당 처리한다.

단독가구 형성 기간은 현재의 가구형태가 시작된 시기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예를 들어, 노인부부로 살아오다가 현재는 사별해서 독거로 지내는 경우, 현재의 가구형태가 시작된 시기, 즉 독거로 살아온 시기만을 기입하면 된다. 또한, <문 H12>은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보기 5)번은 결혼과 동시에 분가한 경우를 말하며, 6)번은 결혼 후 동거하다가 이후에 분가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평생 미혼으로 같이 살 사람이 없거나, 자녀가 없거나 한 경우, 경우에 따라 모두 딸이기 때문에 부부 또는 혼자 살고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 등은 기타에 기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

배우자와만 함께 생활하거나 혼자 거주한지가 오래된 경우는 처음은 이유가 (5)이었던데라고 현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두 분 또는 한 분끼리 살기 시작한 시점과 현재의 이유가 다를 수 있다. ‘현재’ 두 분 또는 한 분만 따로 사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을 받아야 한다.

조사대상노인을 기준으로 노인 가구형태가 ①~④인 경우만 응답한다. (노인 혼자 또는 부부가 부모세대와만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문 H13】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점

단독가구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혼자 생활하는지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다를 수 있다.

【문 H14】 기혼자녀와의 동거 이유

가치관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확대가족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에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이유가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자발적인 것인지 등 다양한 기혼자녀 동거이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동거하고 있는 기혼자녀가 없는 경우는 비해당 처리 ‘9’ 한다.

자녀와 이혼.별거하는 며느리(또는 사위), 자녀가 사망한 며느리(사위)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가 사망한 경우 생존자녀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자녀가 사망한 며느리(사위)와 동거하는 경우로 간주, 관련하여 조사된 것은 없애지 말고 그대로 둔다.

【문 H15】 동거자녀와의 생활양식

자녀와 동거한다고 해서 모든 생활을 공유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생활비 부담과 같은 경제생활과 가사 등의 일상생활을 분담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집을 공유한다는 것 외에는 이러한 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데 본 질문의 목적이 있다. 분담하는 방법에는 나누어서 하지만 부모가 부담(수행)하는 경우(1), 자녀가 부담(수행)하는 경우(2), 부모나 자녀가 공동으로 부담(수행)하는 경우(3)가 있고, 이 외에도 서로 각자 알아서 따로 하는 경우(4)가 있을 수 있다.

【문 H16, H16-1】 바람직한 노후거주형태

응답자가 노년기의 자녀동거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노년기의 자녀동거를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다. 선택지는 자녀의 성(아들, 딸) 형편이 되는 자녀, 마음이 맞는 자녀로 구분한다. 노년기의 자녀동거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문 H16-1>은 ‘9 비해당’ 처리하고 <문 H17>을 질문한다.

【문 H17】 바람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응답자 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물어 선택하도록 하며, 기타의 내용을 응답할 경우 기입하도록 한다. 본인 스스로 마련, 자녀들이 마련, 국가적 차원의 보장 중에서 선택한다.

I.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문 I1~I2】 (배우자) 부모의 생존여부,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응답자의 부모님에 관한 사항부터 질문하고 난 후 배우자의 부모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한다. 부모님의 생존여부를 각각 질문하여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기입한다. 만약 응답자의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모두 사망하신 경우에는 <문 I3>으로 간다. 나머지 문항은 모두 ‘9 비해당’ 처리한다.

양자인 경우 법률상의 부모를 부모로 간주하고, 친부모가 이혼별거로 인해 재혼한 경우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사람을 부모로 간주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생존하고 계신 부모님의 경우에는 부모의 건강상태를 각각 질문하도록 한다.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취급하며,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상태를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배우자의 부모에 관한 질문은 응답자의 혼인상태가 사별, 이혼 또는 별거인 경우 배우자의 부모는 조사하지 않고 ‘9 비해당’ 처리한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인 경우는 조사대상이 된다.

【문 I3】 생존 형제·자매수

노인 본인의 생존 형제·자매수를 질문하고 있으면 형제·자매수를 기록한다.

노인 본인의 생존 형제·자매수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수는 ‘99’로 기록한다.

【문 14~14-1】 가까운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접촉 및 연락

자녀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까운 친인척(형제자매 포함)에 대하여 접촉 및 연락빈도를 조사한다.

【문 15~15-1】 가까운 친구·이웃·지인과의 접촉 및 연락

가까운 친구·이웃·지인과의 접촉 및 연락빈도를 조사한다.

【문 16】 가까운 친인척, 친구·이웃·지인의 수

가깝게 지내는, 즉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인척과 친구·이웃·지인의 수를 질문한다. 이 때 친인척에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 친인척, 친구·이웃에 관한 질문에서 배우자의 친인척도 포함한다. (※ 인척: 배우자(配偶者)의 일방(一方)과 타방의 혈족(血族)과의 사이에 생긴 척분. 외가(外家)와 처가의 혈족(血族). 혼척(婚戚). 외가(外家)와 처가에 딸린 겨례 불이)

【문 17】 집에 동거가족 외 사람접촉빈도

집에 동거가족 외에 사람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보기를 참조하여 기입한다.

J.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질문 J1~J3 , 항목 1)~3)】 동거자녀, 비동거자녀, 본인(배우자) 부모와의 고민상담(정서적 도움), 청소·식사준비·세탁(도구적 도움), 간병·수발·병원 동행 도움의 교환

노인이 주위의 사람들과 어떠한 종류의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정서적인 부양으로는 걱정거리나 문제점 등을 상담하는 것, 도구적인 부양으로는 청소, 식사준비(장보기, 반찬제공 등 포함)를 파악한다. 세탁·간병·수발·병원 동행 등의 도움에 대해서도 받았는지와 주었는지를 각각 질문하도록 한다.

동거자녀, 비동거자녀, (배우자)부모 각각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며, 해당자가 없을 경우 (2)없음 체크후 이후 문항은 '9 비해당' 처리한다.

【질문 J1~J3 항목 4】 동거자녀, 비동거자녀, 본인(배우자)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의 교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를 정기적인 현금지원,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현물 지원 각각에 대하여 질문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동거자녀, 비동거자녀, (배우자)부모 각각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며, 해당자가 없을 경우 (2)없음 체크후 이후 문항은 ‘9 비해당’ 처리한다. 동거자녀, 비동거자녀, (배우자)부모가 다수인 경우 각 대상자중 한명 이상이라도(모두가 아니라) 그러한 도움을 주고 받았으면 도움의 교환이 있는 것이다.

【질문 J4】 10세미만 손자녀 돌봄(양육) 여부

지난 1년간(조사시점 기준 1년전부터 현재까지), 직접 돌봐준 10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친손자·외손자 상관없으며, 동거 여부 역시 상관 없다. 있다고 한 경우 몇 명인지 전체 수를 기입한다. 없다고 한 경우는 『K. 생활 환경』 영역 문항으로 넘어간다.

K. 생활 환경

【문 K1】 주택소유 여부

- 1) 자가: 실제 가구원의 명의(명의 기준)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완불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 2) 전세: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3) 보증금 있는 월세: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 4)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 ※ 사글세: 보증금을 내고 그 보증금에서 매월 월세를 공제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없는 월세로 분류한다.
- 5) 무상: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노인 부부가 계시다가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할아버지 명의의 집을 등기이전을 안 했을 경우 할머니 소유의 집으로 본다.

【문 K2】 주택구조의 편리성

어르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공간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불편한 공간이 없다고 응답하면 ‘0’ 으로 기록한다.

【문 K3】 외출 시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

외출 시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묻는 질문이다. 단, ‘D. 기능상태 및 간병수발’ 영역의 <문 D6>의 5(누웠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에서 자립정도 (3)다른 사람의 완전도움으로 응답한 후 <문 K3> 외출 시 교통수단에서 (5) 자전거, (6) 오토바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하다.

※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기차’ 는 ‘기타⑦’ 로 처리한다.

※ 와상 등의 이유로 외출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는 ‘9 비해당’ 처리한다.

【문 K4】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어르신이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도보 시, 대중교통 이용 시 어려운 점 등을 물어보고 있다. 단, 몇 번의 확인 후에도 불편한 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0’ 으로 기록한다.

다양한 기타의견의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한다. 짧은 횡단보도 신호, 작은 글씨표기 등이 기타에 속할 수 있다.

※ 와상 등의 이유로 외출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는 ‘9 비해당’ 처리한다.

【문 K5 ~ 문 K5-2】 현재 운전 여부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는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는지, 평생 한 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다면,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정도 <문 K5-1>에서 5점 척도로 체크하고, <문 K6>로 가며, <문 K5-2>는 ‘9 비해당’ 처리한다.

과거에는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문 K5-2>에서 만 몇 세에 그만두었는지를 물어본다. 운전을 그만 둔 나이가 현재 나이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평생 운전한 경험이 없으면 <문 K6>로 가며 <문 K5-1>과 <문 K5-2>는 ‘9 비해당’ 처리한다.

【문 K6 ~ K6-1】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1)예’ 를 기입하고 정확한 현재 시가를 기록하고, 자동차가 없다면 ‘(2)아니요’ 를 기입한다. 가구가 여러대의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각 자동차의 시가를 합제한 금액을 기록한다.

※ 정확한 시가를 알지 못할 경우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참고하여 중고가격 시세 참고

☞ 해당 자동차보험증권 상 자기차량 평가금액을 확인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di.or.kr>) 차량기준가액 참조

【문 K7】 주요기관·시설과의 도보 이동시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주요 기관시설까지 도보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시장·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장소, 병의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읍면동 사무소, 각종 복지관, 버스지하철역까지 가는데 각각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체크한다.

※ <문 K3>에서 ‘외출안함’ 으로 응답했을 경우에도 도보 이동시간을 체크하며, 과거 외출했을 당시 이동시간을 기록한다.

【문 K8】 시설 및 서비스 이용 빈도

경로식당, 식사(밀반찬)배달 서비스,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 여가문화시설, 민간문화 시설을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보기를 참조하여 기록한다.

참고로, 경로식당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가정형 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실비로 점심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상담시설, 기타 사회복지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단, 경로당에서 노인들끼리 모여 식사를 해 먹는 것은 제외한다.

식사배달서비스는 정부나 각종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락 또는 밀반찬 배달서비스를 이야기한다. 민간시장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식사배달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여성회관 등은 노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복지시설이다.

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공공 여가문화시설로 주민의 일부인 노인들도 이러한 공공 여가문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 K9】 거주지역 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한 점

현재 거주지역 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생활 인프라, 교통환경, 녹지공원환경,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고령친화적 생활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단, 몇 번의 확인 후에도 불편한 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0’ 으로 기록한다.

【문 K10】 낙상 경험

지난 1년간 낙상(넘어지거나 미끄러짐, 주저앉음) 경험을 질문하고, 낙상 횟수를 파악한다. 낙상 경험이 없는 경우는 <문 K10-1>과 <문 K10-2>는 ‘9 비해당’ 처리하고 <문 K11>을 질문하도록 한다.

【문 K10-1】 낙상으로 인한 치료 경험 여부

지난 1년간 낙상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는지를 질문한다.

【문 K10-2】 낙상 경험의 주된 이유

낙상의 주된 이유를 질문한다.

【문 K11】 낙상에 대한 두려움

평소에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를 질문한다. 노인의 경우 낙상의 두려움으로 외출을 하기를 꺼려하거나, 심리적 위축으로 활동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문 K12】 안전사고 여부

지난 1년간 가정 내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안전사고에는 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이 포함된다.

【문 K13】 범죄피해 여부

지난 1년간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범죄피해는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노인 대상 사기성 물건 구매 범죄, 노인을 대상으로 자주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등이다.

재산범죄는 재산(재물)과 관련된 범죄로 강도, 절도, 장물,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에 의해 발생한 범죄이다.

폭력 및 강력범죄의 종류에는 폭력행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및 유인, 체포 및 감금, 손괴,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이다.

노인 대상 사기성 물건 구매 경험은 건강식품, 생활용품, 장판 등의 물건을 노인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것을 구매한 경험 등을 말한다.(예: 노인대상홍보관).

보이스피싱은 사기성 전화로 공공기관(은행, 경찰, 우체국) 및 병원 혹은 기타 관련인이라고 노인을 속이고 돈 등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이로 인한 피해경험을 말한다.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체크한다.

L. 노후생활과 삶의 질

【문 L1】 삶의 만족도

노인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자신의 건강상태, 자신의 경제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회·여가문화활동, 친구 및 지역사회관계 각각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선택한다. 이때, 배우자와의 관계는 유배우자일 경우에만, 자녀와의 관계는 생존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문3)은 비해당⑨ 처리하고, 생존자녀가 없는 경우 문4)는 ‘9 비해당’ 처리한다.

【문 L2】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기준

노인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기준에 대한 질문이다. 직접 연령을 기입한다.

【문 L3】 노인에 대한 연령규범

한 사회는 나이에 맞는 역할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 것을 연령규범이라 한다. 고

령화에 따라 연령규범이 약화 및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노인자신들이 노인이라는 연령규범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질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재혼, 일, 새로운 공부, 젊어보이고 싶은 욕심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질문하고 있다.

【문 L4, L4-1】 노인차별 경험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노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였는가 여부와, 그런 경우 주로 어떤 경우에 차별을 당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이기 때문에 경험한 차별이 없었다고 응답하면 <문 L4-1>은 ‘9 비해당’ 처리하고 <문 L5>를 질문한다.

【문 L5】 노인학대

지난 1년간 노인학대의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이다. 신체적 고통,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경우, 금전적 피해, 건강하지 않을 때 돌봐주지 않음, 거의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음의 각 경우에 경험 유무 체크를 하고, ‘있다’에 체크한 경우 누구에 의해 경험을 했는지 <별첨1> ‘노인과의 관계’를 참고하여 기입한다.

대상 어르신인 배우자, 자식 등 보호자가 한분도 없을 경우, 비해당이 아니라 ‘(2)아니요’로 처리한다.

자녀가 학대를 한 경우, 제일 강도 높은 학대를 한 자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럼에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장남/장녀로 기록한다.

【문 L6】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인지도

학대를 경험한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알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 개선을 통하여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노인보호사업 확대, 노인보호사업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노인학대 사례 적극 발굴, 정책개발 및 제안을 위한 연구사업 강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확대, 상담원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홍보 및 협력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24개의 지방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중이다.

【문 L7】 선호 재산처리방식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는 질문이다.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눠준다,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준다, 장남에게만 준다, 효도한 자녀에게 준다,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준다, 전체 또는 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 나 자신(배우자)을 위해 쓰겠다 중에 선택하며,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기입한다.

【문 L8】 죽음 대비 정도

본인의 죽음에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수의, 묘지(답골당 포함), 상조회 가입, 유서작성, 죽음준비교육 수강 여부를 각각 물어본다.

【문 L9】 선호 장례 방법

노인 자신의 죽음 이후 장례 방법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

화장후 납골당은 화장한 유골을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화장후 자연장(수목·잔디·화초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화장후 산골(散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 강,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문 L10】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연명치료란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료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과잉진료 및 자주적인 죽음권이라는 맥락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의료의향성(advance medical directives)’ 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 대비하여 생명의 연장 및 특정치료여부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미리 표시하는 공적 문서이다.

현대의학의 수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죽음에 임박한 생명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그리고 인위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면 호흡과 심장의 박동을 계속하는 한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생명으로서 보호받게된다, 사전에 본인 스스로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

시가 없는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에는 의사들은 모든 기술과 지식을 동원하여 생명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것이 의료윤리의 원칙이기 때문이고, 생명연장에 소홀히 한다면 법적으로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명 치료는 본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가족들에게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된다.

양식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나는(○○○)는 맑은 정신을 가진 성인으로 나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이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한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절(중지)지시(복수 선택 가능)
- 적용 시기 선택(복수 선택가능)

【문 L11】 자살 생각 경험

만 60세 이후 노년기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을 묻는 질문이다. 자살을 하고 싶었던 적이 없는 응답자는 『 M. 인지기능영역』으로 바로 넘어간다. 따라서 <문 L11-1>과 <문 L11-2>은 ‘9 비해당’ 처리한다.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L11-1>과 <L11-2> 모두 질문하여 기록한다.

【문 L11-1】 자살을 생각한 이유

자살을 생각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다.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배우자 가족지인의 사망,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 배우자가족의 건강 및 수발문제 등에서 선택하고, 선택지 이외의 응답일 경우 기타에 기입한다.

【문 L11-2】 자살 시도 경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을 묻는 질문이다. 경험이 있으면 몇 회 시도했는지 기입한다.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없으면 회수는 ‘9 비해당’ 코딩한다.

M. 인지기능

【조사원 안내】

인지기능 검사는 응답자의 기억력, 일상적인 계산 능력 등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정신능력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검사는 또한 치매정도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측정방법이기도 합니다.

인지능력은 조사원의 목소리, 설문을 읽는 속도,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원은 인지능력검사에 대한 올바른 측정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응답자의 기억력, 계산능력, 판단능력, 명령시행 능력이 측정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설문을 한번만 읽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원의 올바른 면접 방법이 가장 중요시 되는 영역입니다.

【시행준비물】

- 검사용지,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볼펜), 시계, A4용지, 돋보기, 보청기

【준수 사항】

- A. 시행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시행 지침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시행 지침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B. 채점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응답자의 반응을 꼭 기록해야 합니다.
- 그래야 채점이나 시행 오류를 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오답인지 정답인지 채점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응답자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여 채점기준에 대해 연구진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C. 인지능력검사 사전 고려사항
- 평소 안경이나 보청기 사용자들은 검사 전 착용하도록 합니다.

- 테스트 도중 방해 및 장애요인은 제거합니다. 검사를 위한 조용한 공간을 확보한 뒤, 응답자를 달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 앉도록 하시고, 전화는 가능하면 집안의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방해 및 장애요인은 반드시 메모합니다.

【진행 중 유의 사항】

- 인지기능 검사는 응답자의 수검 동기 및 태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 어떤 질문은 쉽지만, 어떤 질문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쉬운 질문이나 어려운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자신을 시험하려 든다고 화를 내거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있고 본인이 아는 대로 대답하시면 된다고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 응답자가 평소의 기능을 검사에서 충분히 발휘하도록 긴장을 풀고 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 불안하고 초조해하면 격려하여 최대한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지침 이외의 도움은 절대로 금지합니다.
- 인지기능은 ‘모르겠음’, ‘응답거부’ 는 모두 오답으로 처리합니다. 즉 이 영역에서 ‘모르겠음’ 과 ‘응답거부’ 에 조사원이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 모르겠음, 응답거부 등의 답안은 지양합니다.
- 정답을 알려 주지 마십시오: 응답자가 결과와 상관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거나 어렵게 합니다. 선생님은 매우 잘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최대한 안심시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정답을 알려드리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라고 응대합니다.

【문항별 지침】

- 시간지남력

피검자가 “모른다” 고 대답할 때 바로 틀렸다고 체점하지 말고 “그래도 오늘이 몇 년/계절/ 몇 월/ 며칠/ 요일 같은지 말씀해보세요” 와 같이 추측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또 피검자가 두 가지 답을 대답하고, 그 중에 정답이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답을 고르도록 지시한다.

● 문항 1. 연도

- 1) 해당 연도만 정답으로 하며 ‘기축년’ 등은 오답으로 한다.
- 2) 정확하게 4자리 숫자로 대답을 하여야 정답으로 한다.
- 3) 4자리를 모두 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대답하도록 재질문한다.
가령, 2009년을 “9년” 과 같이 대답하는 경우 정확한 4자리 숫자로 대답하도록 한다.

● 문항 2. 계절

- 1) 3, 4, 5월을 봄, 6, 7, 8월을 여름, 9, 10, 11월을 가을, 12, 1, 2월을 겨울로 한다.
- 2) 간절기에는 최대 2주의 간격 범위에서 앞으로 올 계절 또는 지나간 계절을 대답하여도 정답으로 한다.

● 문항 3. 날짜 (일)

피검자가 음력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와 맞으면 정답으로 한다.

● 문항 4. 요일

요일에 대한 개념을 도와줄 때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을 모두 보기로 들어주고 특정요일만 언급하지 않는다.

● 문항 5. 월

- 1) 피검자가 음력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와 맞으면 정답으로 한다.
- 2) 숫자가 아니더라도 정월, 동짓달 등으로 대답하여도 정답으로 간주한다.

□ 장소지남력

● 문항 6-8. 지리적 위치

- 1) 검사를 시행하는 행정구역 순서에 따라 높은 행정구역에서부터 차례로 물어본다.
- 예, ① 검사하는 장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라면, 6번 문제 “도”, 7번 문제 “시”, 8번 문제 “구” 를 묻는다.

- 예, ② 검사하는 장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이라면, 6번문제 “특별시”, 7번 문제 “구”, 8번 문제 “동” 을 묻는다.
 - 예, ③ 검사하는 장소가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춘천정신보건센터” 이라면, 6번문제 “도”, 7번 문제 “시”, 8번 문제 “동” 을 묻는다.
- 2) “도” 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를 들어 줄 경우에는 해당 도가 아닌 다른 2개의 도를 설명한다. 가령, 검사하는 장소가 “경기도” 인 경우, “충청도, 전라도와 같은 도의 이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무슨 도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
 - 3) 북도와 남도를 정확하게 대답하여야 정답으로 하며, 구분하지 않고 답할 경우에는 확인하도록 한다. 가령, “충청도” 라고 대답하는 경우, “충청북도인가요, 충청남도인가요?”

● 문항 9. 총수

정확하게 답한 경우 정답으로 하며 두 개를 답한 경우 하나를 고르도록 지시한다.

● 문항 10. 장소명

정확한 이름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적인 이름은 정답으로 한다.

- 예, 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 정확한 이름이지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분당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교부속병원” 은 맞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분당병원, 서울병원” 은 오답으로 한다.
- 예, ② “봉천 0동 경로당” 을 “봉천동경로당” 으로 대답하면 정답으로 한다.

□ 기억력

문항 11은 기억 등록, 문항 13은 기억 회상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문항 11 시행 후 간섭과제로 주의집중력을 측정하는 문항 12를 시행한 다음, 문항 13을 시행한다.

● 문항 11. 기억 등록

- 1) “끝까지 듣고” 를 강조하여 반드시 세 단어를 한꺼번에 불러주고 따라하도록 해야 한다.
- 2) 첫 응답으로만 정답을 평가한다. 성공적으로 따라 말한 단어수로 채점한다.(3점 만점)

- 3) 첫 응답에서 모든 물건이름을 말하지 못한 경우 문항, 13의 기억회상 평가를 위해 다시 세 단어를 불러주고 기억하도록 반복한다. 이 과정은 총 3회까지 시행한다.
- 4) 반복 시도에서 첫 응답보다 많은 단어수를 말했더라도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 문항 13. 기억 회상

문제 11번에서 불러준 세 단어를 회상하는 것이며, 성공적으로 회상한 단어수로 채점한다.(만점 3점)

주의집중력

● 문항 12. 100에서 7 연속 빼기

- 1) 답이 틀리더라도 틀렸다는 표현은 하지 않고 계속한다.
- 2) 맞는 부분에 대하여만 독립적으로 채점한다. 가령, $100-7=92$ • $92-7=85$ 라고 하는 경우에 85는 정답으로 한다.

언어 능력

● 문항 14. 물건이름대기

사투리로 대답하여도 확인하여 맞으면 정답으로 한다.

● 문항 15. 따라말하기

한번만 말해주고 반복하지 않는다. 정확히 따라한 경우 정답으로 한다.

□ 실행 능력

● 문항 16. 3단계 명령 수행

- 1) 지시할 때 “오른손”, “반”, “무릎 위” 를 강조하여 말한다.
- 2) 지시를 반복하지 않으며, 옆에서 도와주면 안 된다.
- 3) 피검자의 오른손을 보지 않고 지시를 하며, 지시를 끝낸 후에 종이를 건네 준다.
- 4)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피검자에게는 문항을 “왼손” 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5) A4지와 같이 직사각형 종이를 사용한다.
- 6) 종이를 건네줄 때에는 책상 위에 올려놓지 말고, 한 손으로 들어 건네준다.
- 7) 피검자가 양손으로 받으면 틀린 것으로 채점한다.
- 8) 직사각형 종이를 반으로 접은 경우 정답으로 하며, 대각선으로 접거나 모퉁이만 접으면 틀린 것으로 채점한다.
- 9) 무릎 위에 놓지 않고 배 앞에 엉거주춤 들고 있으면 틀린 것으로 채점한다.

□ 시공간구성 능력

● 문항 17. 도형 모사

- 1) 다섯 개의 변을 가진 2개의 도형이 사각형을 이루며 겹쳐져 있으면 정답으로 한다.
- 2) 정확한 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변이 5개가 있으면 정답으로 하며, 각 변 사이 간격은 최대 0.3cm까지 가능하나 그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는 오답으로 한다.
- 3) 정답과 오답의 예를 제시하였다. <참조 1>

□ 판단 및 추상적 사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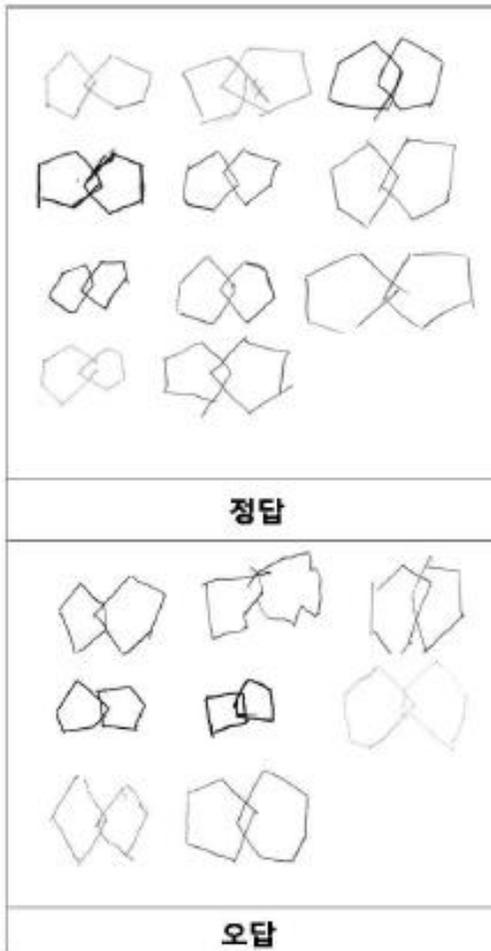
● 문항 18. 세탁 이유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입으려고” 등의 위생과 청결에 대한 내용이면 정답이다

● 문항 19. 속담 풀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큰 것이 된다, 조그만 것을 모아 크게 된다, 아껴야 한다.” 등의 내용이면 정답이다.

※ 도형모사 정답 / 오답 예시



N. 가구경제상태

【응답자】

<문 N1> ~ <문 N4>까지는 가구경제상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가구원을 응답자로 한다.

【문 N1】 생활수준

응답자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구의 생활수준을 기입한다.

【문 N2】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

지난 한 해(2013.1.1~2013.12.31)의 소비지출을 파악하는 질문으로 소비지출은 가구 구성원 모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만원 단위로 기록하고, <문 N2-1>의 (1)식비~(11)경조사비를 참고하되,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 지출과 부동산 등의 자산축적을 위한 지출, 차입금 상환 등의 현금 지출 등 기타 지출은 제외된다.

【문 N2-1】 가구 지출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보기를 참조하여 주관적으로 부담이 되는 항목을 한 가지만 기입한다.

【문 N3】 항목별 소득 유무 및 소득금액

<문 G1-1>과 <문 G1-2>를 참고하되,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과 무관하게, 지난 1년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같이 살았던 가구원에 대한 항목별 연소득을 질문하고 이를 합하여 기입한다.

※ 항목별 소득금액에서는 가구원의 항목별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하고 가구원은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함께 생활하지 않더라도, 생계(소득과 지출)를 같이 하는 가구원을 말한다.

【문 N4】 가계 자산 및 부채현황파악

<문 G2-1>과 <문 G2-2>를 참고하되, 개인이 아닌 현재 가구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질문임을 유의하도록 한다. 집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 외에도 가구원 소유의 별도의 주택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련항목은 <문 G2-1>과 <문 G2-2>에 대한 설명과 동일하며, 노인독신가구 또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문 G2-1>과 <문 G2-2>의 내용을 이기하도록 한다.

조사원 확인 사항

【조사원 확인사항 1】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를 묻는 질문이다. 주택 종류에 따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
- 아파트: 5층 이상의 주택
- 연립·다세대 주택
 - 연립주택: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을 초과하는 4층 이하 주택
 - 다세대(다가구)주택: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 이하 4층 이하 주택
- 기타

【조사원 확인사항 2】 주거지의 위치

주거지의 위치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지하, 반지하, 지상, 옥탑에서 선택한다.

【조사원 확인사항 3】 주택환경

조사원이 확인하기에 주택환경이 노인이 살기에 적합한 구조인지를 살펴보는 질문이다. 편한지 불편한지를 살펴보고, 노인을 위한 배려시설(문턱 없애기, 경사 조절, 손잡이 설치 등)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기록한다.

【조사원 확인사항 4, 4-1】 응답노인의 배우자의 조사실시 여부 및 아이디 기록

응답노인의 배우자의 노인조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기록 한 후 응답노인의 배우자가 노인실태조사에 응답한 경우 배우자 조사표상의 ID를 기록한다.

또한 응답노인의 배우자의 가구원 번호를 기록한다. 응답노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및 별거, 미혼)는 ‘99 비해당’ 처리한다.

【대리응답】 대리응답 이유

대리응답을 받은 경우 그 이유를 보기에서 골라 작성한다.

제4장 별첨

<별첨 1> 노인과의 관계

- 01 노인 본인
- 02 노인의 배우자

- 11 노인의 장남(외동 포함)
- 12 노인 장남(외동 포함)의 배우자 (첫째 며느리)
- 13 노인의 차남
- 14 노인 차남의 배우자 (둘째 며느리)
- 15 노인의 삼남 이상
- 16 노인 삼남 이상의 배우자 (셋째 이상 며느리)

- 17 노인의 장녀(외동딸 포함)
- 18 노인 장녀의 남편(첫째 사위)
- 19 노인의 차녀
- 20 노인 차녀의 남편(둘째 사위)
- 21 노인의 삼녀 이상
- 22 노인 삼녀 이상의 남편(셋째 이상 사위)

- 31 노인의 친손자
- 32 노인의 친손자의 배우자(손자며느리)
- 33 노인의 친손녀
- 34 노인의 친손녀의 배우자(손녀사위)
- 35 노인의 외손자
- 36 노인의 외손자의 배우자(손자며느리)
- 37 노인의 외손녀
- 38 노인의 외손녀의 배우자(손녀사위)

(뒷장에 이어서)

41 노인의 증손자녀 및 증손자녀의 배우자

51 노인의 아버지

52 노인의 어머니

53 노인 배우자의 아버지(장인, 시부)

54 노인 배우자의 어머니(장모, 시모)

61 노인의 할아버지

62 노인의 할머니

63 노인 배우자의 할아버지

64 노인 배우자의 할머니

71 노인의 남자형제

72 노인의 남자형제의 배우자

73 노인의 여자형제

74 노인의 여자형제의 배우자

75 노인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및 배우자

76 노인 배우자의 형제(시동생, 시아주버니, 배우자남, 시누이, 배우자형, 배우자제)

77 노인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동서, 처남댁)

78 노인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및 배우자

81 노인의 기타혈연

82 노인 배우자의 기타혈연

91 비혈연 동거인

92 친구 및 이웃

9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7 기타

<별첨 2> 노인가구형태

01 노인독신가구

02 노인부부가구 ① (부부 중 1인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03 노인부부가구 ②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11 자녀동거 노인가구 ① (기혼 장남)

12 자녀동거 노인가구 ② (기혼 차남이하)

13 자녀동거 노인가구 ③ (기혼 딸)

14 자녀동거 노인가구 ④ (기혼 장남 + 미혼자녀)

15 자녀동거 노인가구 ⑤ (기혼 차남이하 + 미혼자녀)

16 자녀동거 노인가구 ⑥ (기혼 딸 + 미혼자녀)

17 자녀동거 노인가구 ⑦ (기혼 장남 + 기혼 딸)

18 자녀동거 노인가구 ⑧ (기혼 차남 이하 + 기혼 딸)

19 자녀동거 노인가구 ⑨ (미혼자녀)

20 자녀동거 노인가구 ⑩ (첫째 며느리)

21 자녀동거 노인가구 ⑪ (차남 이하 며느리)

22 자녀동거 노인가구 ⑫ (첫째 며느리 + 미혼자녀)

23 자녀동거 노인가구 ⑬ (차남 이하 며느리 + 미혼자녀)

24 자녀동거 노인가구 ⑭ (기혼 장남 + 기혼차남 이하 또는 기혼 딸 + 미혼자녀)

25 자녀동거 노인가구 ⑮ (기혼장남 + 기혼차남 이하)

29 기타 자녀동거 노인가구

31 노인 독신 + 기혼손자녀

32 노인 독신 + 미혼손자녀

33 노인 독신 + 기혼손자녀 + 미혼손자녀

34 노인 부부 + 기혼손자녀

35 노인 부부 + 미혼손자녀

36 노인 부부 + 기혼손자녀 + 미혼손자녀

(뒷장에 이어서)

41 노인독신 + 부모/부 또는 모

42 노인부부 + 부모/부 또는 모

51 노인부부/독신 + 부모/부 또는 모 + 기혼자녀(+미혼자녀) + (손자녀)

52 노인부부/독신 + 부모/부 또는 모 + 미혼자녀 + (손자녀)

61 노인독신 + 친척

62 노인부부 + 친척

63 노인독신 + 비혈연

64 노인부부 + 비혈연

77 기타 노인가구

<별첨 3> 가구주와의 관계

- 01 가구주 본인
- 02 가구주의 배우자

- 11 가구주의 장남(외동 포함)
- 12 가구주 장남(외동 포함)의 배우자 (첫째 며느리)
- 13 가구주의 차남
- 14 가구주 차남의 배우자 (둘째 며느리)
- 15 가구주의 삼남 이상
- 16 가구주 삼남 이상의 배우자 (셋째 이상 며느리)

- 17 가구주의 장녀(외동딸 포함)
- 18 가구주 장녀의 남편(첫째 사위)
- 19 가구주의 차녀
- 20 가구주 차녀의 남편(둘째 사위)
- 21 가구주의 삼녀 이상
- 22 가구주 삼녀 이상의 남편(셋째 이상 사위)

- 31 가구주의 친손자
- 32 가구주의 친손자의 배우자(손자며느리)
- 33 가구주의 친손녀
- 34 가구주의 친손녀의 배우자(손녀사위)
- 35 가구주의 외손자
- 36 가구주의 외손자의 배우자(손자며느리)
- 37 가구주의 외손녀
- 38 가구주의 외손녀의 배우자(손녀사위)

(뒷장에 이어서)

41 가구주의 증손자녀 및 증손자녀의 배우자

51 가구주의 아버지

52 가구주의 어머니

53 가구주 배우자의 아버지(장인, 시부)

54 가구주 배우자의 어머니(장모, 시모)

61 가구주의 할아버지

62 가구주의 할머니

63 가구주 배우자의 할아버지

64 가구주 배우자의 할머니

71 가구주의 남자형제

72 가구주의 남자형제의 배우자

73 가구주의 여자형제

74 가구주의 여자형제의 배우자

75 가구주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및 배우자

76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시동생, 시아주버니, 처재, 처형, 처남)

77 가구주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동서, 처남댁)

78 가구주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및 배우자

81 가구주의 기타혈연

82 가구주 배우자의 기타혈연

91 비혈연 동거인

97 기타

<별첨 4> 2014년 간지 및 띠별 연령(세는 나이) 대조표

연령	서기	간지	띠	연령	서기	간지	띠	연령	서기	간지	띠	연령	서기	간지	띠
1	2014	갑오	말	26	1989	기사	뱀	51	1964	갑진	용	76	1939	기묘	토끼
2	2013	계사	뱀	27	1988	무진	용	52	1963	계묘	토끼	77	1938	무인	범
3	2012	임진	용	28	1987	정묘	토끼	53	1962	임인	범	78	1937	정축	소
4	2011	신묘	토끼	29	1986	병인	범	54	1961	신축	소	79	1936	병자	쥐
5	2010	경인	범	30	1985	을축	소	55	1960	경자	쥐	80	1935	을해	돼지
6	2009	기축	소	31	1984	갑자	쥐	56	1959	기해	돼지	81	1934	갑술	개
7	2008	무자	쥐	32	1983	계해	돼지	57	1958	무술	개	82	1933	계유	닭
8	2007	정해	돼지	33	1982	임술	개	58	1957	정유	닭	83	1932	임신	잔늪
9	2006	병술	개	34	1981	신유	닭	59	1956	병신	잔늪	84	1931	신미	양
10	2005	을유	닭	35	1980	경신	잔늪	60	1955	을미	양	85	1930	경오	말
11	2004	갑신	잔늪	36	1979	기미	양	61	1954	갑오	말	86	1929	기사	뱀
12	2003	계미	양	37	1978	무오	말	62	1953	계사	뱀	87	1928	무진	용
13	2002	임오	말	38	1977	정사	뱀	63	1952	임진	용	88	1927	정묘	토끼
14	2001	신사	뱀	39	1976	병진	용	64	1951	신묘	토끼	89	1926	병인	범
15	2000	경진	용	40	1975	을묘	토끼	65	1950	경인	범	90	1925	을축	소
16	1999	기묘	토끼	41	1974	갑인	범	66	1949	기축	소	91	1924	갑자	쥐
17	1998	무인	범	42	1973	계축	소	67	1948	무자	쥐	92	1923	계해	돼지
18	1997	정축	소	43	1972	임자	쥐	68	1947	정해	돼지	93	1922	임술	개
19	1996	병자	쥐	44	1971	신해	돼지	69	1946	병술	개	94	1921	신유	닭
20	1995	을해	돼지	45	1970	경술	개	70	1945	을유	닭	95	1920	경신	잔늪
21	1994	갑술	개	46	1969	기유	닭	71	1944	갑신	잔늪	96	1919	기미	양
22	1993	계유	닭	47	1968	무신	잔늪	72	1943	계미	양	97	1918	무오	말
23	1992	임신	잔늪	48	1967	정미	양	73	1942	임오	말	98	1917	정사	뱀
24	1991	신미	양	49	1966	병오	말	74	1941	신사	뱀	99	1916	병진	용
25	1990	경오	말	50	1965	을사	뱀	75	1940	경진	용	100	1915	을묘	토끼

<별첨 5> 만 연령 조건표(2014년 6월 30일 기준: 양력)

연령	출생년월일 (양력)	연령	출생년월일 (양력)	연령	출생년월일 (양력)	연령	출생년월일 (양력)
0	2013. 7. 1~ 현재						
1	2012. 7.1~2013. 6.30	26	1987. 7.1~1988. 6.30	51	1962. 7.1~1963. 6.30	76	1937. 7.1~1938. 6.30
2	2011. 7.1~2012. 6.30	27	1986. 7.1~1987. 6.30	52	1961. 7.1~1962. 6.30	77	1936. 7.1~1937. 6.30
3	2010. 7.1~2011. 6.30	28	1985. 7.1~1986. 6.30	53	1960. 7.1~1961. 6.30	78	1935. 7.1~1936. 6.30
4	2009. 7.1~2010. 6.30	29	1984. 7.1~1985. 6.30	54	1959. 7.1~1960. 6.30	79	1934. 7.1~1935. 6.30
5	2008. 7.1~2009. 6.30	30	1983. 7.1~1984. 6.30	55	1958. 7.1~1959. 6.30	80	1933. 7.1~1934. 6.30
6	2007. 7.1~2008. 6.30	31	1982. 7.1~1983. 6.30	56	1957. 7.1~1958. 6.30	81	1932. 7.1~1933. 6.30
7	2006. 7.1~2007. 6.30	32	1981. 7.1~1982. 6.30	57	1956. 7.1~1957. 6.30	82	1931. 7.1~1932. 6.30
8	2005. 7.1~2006. 6.30	33	1980. 7.1~1981. 6.30	58	1955. 7.1~1956. 6.30	83	1930. 7.1~1931. 6.30
9	2004. 7.1~2005. 6.30	34	1979. 7.1~1980. 6.30	59	1954. 7.1~1955. 6.30	84	1929. 7.1~1930. 6.30
10	2003. 7.1~2004. 6.30	35	1978. 7.1~1979. 6.30	60	1953. 7.1~1954. 6.30	85	1928. 7.1~1929. 6.30
11	2002. 7.1~2003. 6.30	36	1977. 7.1~1978. 6.30	61	1952. 7.1~1953. 6.30	86	1927. 7.1~1928. 6.30
12	2001. 7.1~2002. 6.30	37	1976. 7.1~1977. 6.30	62	1951. 7.1~1952. 6.30	87	1926. 7.1~1927. 6.30
13	2000. 7.1~2001. 6.30	38	1975. 7.1~1976. 6.30	63	1950. 7.1~1951. 6.30	88	1925. 7.1~1926. 6.30
14	1999. 7.1~2000. 6.30	39	1974. 7.1~1975. 6.30	64	1949. 7.1~1950. 6.30	89	1924. 7.1~1925. 6.30
15	1998. 7.1~1999. 6.30	40	1973. 7.1~1974. 6.30	65	1948. 7.1~1949. 6.30	90	1923. 7.1~1924. 6.30
16	1997. 7.1~1998. 6.30	41	1972. 7.1~1973. 6.30	66	1947. 7.1~1948. 6.30	91	1922. 7.1~1923. 6.30
17	1996. 7.1~1997. 6.30	42	1971. 7.1~1972. 6.30	67	1946. 7.1~1947. 6.30	92	1921. 7.1~1922. 6.30
18	1995. 7.1~1996. 6.30	43	1970. 7.1~1971. 6.30	68	1945. 7.1~1946. 6.30	93	1920. 7.1~1921. 6.30
19	1994. 7.1~1995. 6.30	44	1969. 7.1~1970. 6.30	69	1944. 7.1~1945. 6.30	94	1919. 7.1~1920. 6.30
20	1993. 7.1~1994. 6.30	45	1968. 7.1~1969. 6.30	70	1943. 7.1~1944. 6.30	95	1918. 7.1~1919. 6.30
21	1992. 7.1~1993. 6.30	46	1967. 7.1~1968. 6.30	71	1942. 7.1~1943. 6.30	96	1917. 7.1~1918. 6.30
22	1991. 7.1~1992. 6.30	47	1966. 7.1~1967. 6.30	72	1941. 7.1~1942. 6.30	97	1916. 7.1~1917. 6.30
23	1990. 7.1~1991. 6.30	48	1965. 7.1~1966. 6.30	73	1940. 7.1~1941. 6.30	98	1915. 7.1~1916. 6.30
24	1989. 7.1~1990. 6.30	49	1964. 7.1~1965. 6.30	74	1939. 7.1~1940. 6.30	99	1914. 7.1~1915. 6.30
25	1988. 7.1~1989. 6.30	50	1963. 7.1~1964. 6.30	75	1938. 7.1~1939. 6.30	100	1913. 7.1~1914. 6.30

< 별첨 6 > 운동목록표(3단위)

구분	세부활동(코드)	구분	세부활동(코드)	구분	세부활동(코드)	구분	세부활동(코드)
(1) 구기	101. 게이트볼	(2) 라켓	201. 라켓볼	(5) 라듬 스포츠	503. 에어로빅	(7) 지상 레저 스포츠	708. 스키
	102. 골프		202. 배드민턴		504. 피겨스케이팅		709. 승마
	103. 그라운드 골프		203. 스쿼시		601. 걷기		710. 임벽등반
	104. 농구		204. 정구	602. 마라톤	711. 인라인스케이팅		
	105. 당구		205. 탁구	603. 육상 (걷기, 마라톤 제외)	712. 트리아슬론 (철인3종)		
	106. 럭비, 미식축구		206. 테니스	604. 보디빌딩(헬스)	801. 스카이다이빙		
	107. 배구	(3) 무도 / 격투기	301. 검도	(6) 체력 단련 운동	605. 수영	(8) 항공 레저 스포츠	802. 패러글라이딩
	108. 볼링		302. 레슬링		606. 요가		803. 행글라이딩
	109. 소프트볼		303. 무도(유도, 검도, 태권도 제외)		607. 자전거(사이클)		(9) 수상 레저 스포츠
	110. 수구	304. 유도	608. 줄넘기	902. 래프팅			
	111. 아이스하키	305. 태권도	609. 체조 (맨손체조, 생활체조)	903. 수상스키			
	112. 야구	306. 펜싱	701. 등산	904. 스킨스쿠버			
	113. 인라인 하키	307. 권투	702. 빙상	905. 요트			
	114. 족구	308. 격투기(킥복싱, 이종격투기)	703. 사격	906. 웨이크보드			
	115. 축구	(4) 민속 스포츠	401. 석궁, 양궁, 국궁	(7) 지상 레저 스포츠	704. 산악자전거	907. 윈드시핑	
	116. 파크골프		402. 씨름		705. 서바이벌	908. 카누	
	117. 필드하키	(5) 라듬 스포츠	501. 댄스스포츠		706. 스노우보드	(997) 기타 스포츠	909. 그 외 종목
	118. 핸드볼		502. 아쿠아로빅, 수중발레	707. 스케이팅			

<별첨 7> 여가활동목록표(3단위)

구분	세부활동(코드)	구분	세부활동(코드)	구분	세부활동(코드)
1. 문화예술평관람활동	101.영화보기	2. 문화예술참여활동	201.악기연주/노래교실	3. 스포츠관람활동	300 · 스포츠 경기 직접관람·경기장방문관람(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 간접관람-TV, DMB를 통한 관람(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격투기 경기관람, 온라인게임 경기 현장관람(스포츠경기 포함)
	102.기타 · 전시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관람(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공연 관람(국악, 민속놀이), 연극공연 관람(뮤지컬 포함), 무용공연 관람, 연예공연 관람(쇼, 콘서트, 마술쇼)		202.미술활동(그림, 서예, 조각, 디자인, 도예, 민화)		
4. 스포츠참여활동	400. ·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족구, 테니스, 스쿼시, 당구·포켓볼, 볼링, 탁구, 골프, 수영, 윈드서핑, 수상스키, 스킨스쿠버다이빙, 래프팅, 요트, 스노보드, 스키, 아이스스케이팅, 아이스하키, 헬스(보디빌딩),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태보, 배드민턴, 줄넘기, 맨손·스트레칭체조, 홀라후프, 육상, 조깅, 속보, 격투기(우동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권투), 덴스스포츠(탱고, 왈츠, 자이브, 맘보, 폴카, 차차차), 사이클링, 산악자전거, 인라인스케이팅, 승마, 암벽등반, 철인삼중경기, 서바이벌	5. 관광활동	501.자동차 드라이브	6. 취미오락활동	601.화투·고스톱(경매, 뽀, 카지노, 카드놀이, 마작, 복권구입)
			502.기타 · 문화유적방문(고궁, 절, 유적지),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삼림욕, 국내캠핑, 해외여행, 소풍·야유회·나들이, 온천·해수욕, 유람선 타기, 테마파크 가기, 놀이공원·동물원·식물원 가기, 지역축제 참가		602.등산
7. 휴식활동	701.TV시청(DMB/IPTV포함)	8. 사회및기타활동	801.종교활동	603.화초가꾸기	604.독서, 만화책/성경/불경 보기
	702.산책		802. 그 외 사회활동 · 사회봉사활동, 종교활동, 클럽/나이트/디스코/카바레 가기,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 보내기, 계모임/동창회/사교(파티) 모임, 이성교제(데이트)미팅/소개팅, 친구만남/동호회 모임		605. 낚시
	703.음악감상/찬송가·찬불가 듣기		803.기타활동 ·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	606.바둑, 장기, 체스, 윗놀이	607.기타 · 수집활동(스캐프 포함), 생활공예(십자수, 비즈공예, DIY, 꽃꽂이),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노래방 가기, 인테리어(집, 자동차), 미니홈피/블로그 관리, 인터넷 검색/채팅/UCC 제작/SNS, 게임(인터넷, 난네편), 보드게임/퍼즐, 큐브 맞추기, 쇼핑/외식, 음주, 미용(피부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공부·학원 등 이용
	704.기타 ·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비디오(DVD)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별첨 8> 직업분류표(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3단위)

대분류	중분류(코드)	소분류(참고)
관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기업고위임원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보험 및 금융 관리자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판매 및 운송 관리자	
	고객서비스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기타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자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전문가
		인문 및 사회 과학 전문가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시험원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정보 시스템 운영자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안전 관리 및 검사원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 및 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및 의료기사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종교관련 종사자	
	대학 교수 및 강사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기타 교육 전문가	
	법률 전문가	
	행정 전문가	
	인사 및 경영 전문가	
	금융 및 보험 전문가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대분류	중분류(코드)	소분류(참고)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디자이너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행정 사무원 경영관련 사무원 회계 및 경리 사무원 비서 및 사무 보조원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 종사자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통계관련 사무원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혼례 및 장례 종사자 기타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 종사자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운송 서비스 종사자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주방장 및 조리사 음식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영업 종사자
	52. 매장 판매직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53.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작물재배 종사자 원예 및 조경 조사자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62. 임업 숙련직	임업관련 종사자
	63. 어업 숙련직	어업관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 가공관련 기능직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금형·주조 및 단조원 제관원 및 판금원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운송장비 정비원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대분류	중분류(코드)	소분류(참고)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공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
	78.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79. 기타 기능 관련직	배관공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기타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섬유제조 및 가공 기계조작원 직물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세탁관련 기계조작원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발전 및 배전 장치 조작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화물열차 차장 및 관련 종사원 자동차 운전원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 조작직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조작원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기계조작원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대분류	중분류(코드)	소분류(참고)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배달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경비원 및 검표원
군인	100. 군인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기계검침·수금 및 주차 관련 종사원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장교
		장기 부서관 및 준위

<별첨 9> 시·군·구 및 조사구 번호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서울특별시	(11)		
용산구	(11030)	한남동	1103074
성동구	(11040)	금호2·3가동	1104072
광진구	(11050)	자양3동	1105066
동대문구	(11060)	이문1동	1106089
중랑구	(11070)	면목3·8동	1107072
성북구	(11080)	길음2동	1108068
		삼선동	1108082
강북구	(11090)	수유3동	1109065
도봉구	(11100)	방학1동	1110055
		방학2동	1110056
노원구	(11110)	월계2동	1111052
		중계4동	1111064
은평구	(11120)	응암1동	1112059
		신사1동	1112065
		수색동	1112068
서대문구	(11130)	남가좌2동	1113070
마포구	(11140)	상암동	1114074
강서구	(11160)	가양3동	1116066
		방화2동	1116071
구로구	(11170)	구로5동	1117056
		오류2동	1117068
영등포구	(11190)	신길3동	1119065
동작구	(11200)	사당2동	1120073
관악구	(11210)	행운동	1121057
서초구	(11220)	서초3동	1122053
		잠원동	1122055
강남구	(11230)	대치1동	1123060
		역삼1동	1123064
송파구	(11240)	풍납1동	1124051
		마천2동	1124056
		잠실4동	1124075
강동구	(11250)	길동	1125074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부산광역시 (21)			
부산진구	(21050)	범전동	2105053
		개금1동	2105074
동래구	(21060)	사직3동	2106060
남구	(21070)	대연2동	2107052
		대연3동	2107053
		용호3동	2107059
북구	(21080)	덕천2동	2108057
		만덕1동	2108059
		만덕3동	2108061
해운대구	(21090)	반여3동	2109059
사하구	(21100)	괴정4동	2110054
사하구	(21100)	하단1동	2110056
		신평2동	2110059
		장림1동	2110060
연제구	(21130)	연산1동	2113055
		연산3동	2113057
수영구	(21140)	남천1동	2114051
사상구	(21150)	모라1동	2115052
		모라3동	2115054
대구광역시 (22)			
중구	(22010)	남산1동	2201064
동구	(22020)	효목1동	2202060
		안심1동	2202073
서구	(22030)	내당2·3동	2203052
		내당4동	2203053
		비산4동	2203056
북구	(22050)	무태조야동	2205071
		구암동	2205079
		노원동	2205081
수성구	(22060)	수성1가동	2206058
		수성2·3가동	2206059
		중동	2206063
		상동	2206064
달서구	(22070)	이곡1동	2207060
		용산2동	2207073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인천광역시 (23)			
동구	(23020)	송현1·2동	2302055
남구	(23030)	송의2동	2303052
		주안3동	2303067
연수구	(23040)	연수1동	2304053
		연수2동	2304054
		연수3동	2304055
남동구	(23050)	만수4동	2305062
		남촌도림동	2305067
부평구	(23060)	부평4동	2306054
		삼산1동	2306065
		십정2동	2306071
		삼산2동	2306072
계양구	(23070)	계산2동	2307054
		작전서운동	2307058
서구	(23080)	가좌1동	2308062
광주광역시 (24)			
서구	(24020)	상무1동	2402058
		화정4동	2402063
남구	(24030)	사직동	2403054
		봉선1동	2403068
북구	(24040)	중흥1동	2404051
		신안동	2404056
		용봉동	2404057
		운암2동	2404059
		운암3동	2404060
		일곡동	2404078
광산구	(24050)	도산동	2405054
		우산동	2405058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대전광역시 (25)			
동구	(25010)	가양2동	2501064
		용전동	2501065
		신인동	2501077
		성남동	2501079
		부사동	2502059
중구	(25020)	용두동	2502060
		태평2동	2502064
		도마1동	2503052
서구	(25030)	월평2동	2503067
		관저1동	2503072
		노은1동	2504059
유성구	(25040)	노은1동	2504059
대덕구	(25050)	덕암동	2505060
울산광역시 (26)			
중구	(26010)	반구1동	2601052
		반구2동	2601053
		복산2동	2601055
		우정동	2601059
		다운동	2601061
		병영1동	2601062
		중앙동	2601065
		야음장생포동	2602061
남구	(26020)	선암동	2602064
		방어동	2603051
동구	(26030)	일산동	2603052
		남목1동	2603058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경기도	(31)		
수원시 권선구	(31012)	서둔동	3101256
		구운동	3101257
수원시 영통구	(31014)	매탄3동	3101453
성남시 수정구	(31021)	신흥2동	3102152
		북정동	3102163
성남시 중원구	(31022)	은행2동	3102256
의정부시	(31030)	호원1동	3103055
		자금동	3103060
안양시 만안구	(31041)	안양6동	3104156
		석수1동	3104160
		석수3동	3104162
부천시 원미구	(31051)	중동	3105162
부천시 소사구	(31052)	심곡본1동	3105251
부천시 오정구	(31053)	성곡동	3105351
광명시	(31060)	하안3동	3106064
평택시	(31070)	오성면	3107034
		송북동	3107056
동두천시	(31080)	소요동	3108058
고양시 덕양구	(31101)	행신3동	3110169
고양시 일산서구	(31104)	일산2동	3110452
고양시 일산서구	(31104)	송포동	3110458
과천시	(31110)	중앙동	3111051
남양주시	(31130)	진건읍	3113014
		별내면	3113031
		호평동	3113051
시흥시	(31150)	목감동	3115056
군포시	(31160)	산본1동	3116054
		대야동	3116062
하남시	(31180)	신장2동	3118053
이천시	(31210)	마장면	3121034
안성시	(31220)	대덕면	3122035
김포시	(31230)	하성면	3123036
		풍무동	3123054
화성시	(31240)	정남면	3124043
광주시	(31250)	퇴촌면	3125035
양주시	(31260)	백석읍	3126011
여주군	(31320)	여주읍	3132011
연천군	(31350)	진곡읍	3135012
가평군	(31370)	북면	3137035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강원도	(32)		
춘천시	(32010)	서면	3201037
		약사명동	3201054
		석사동	3201066
원주시	(32020)	태장2동	3202063
강릉시	(32030)	옥계면	3203035
		강남동	3203062
		성덕동	3203065
동해시	(32040)	북삼동	3204053
태백시	(32050)	황지동	3205051
삼척시	(32070)	정라동	3207054
횡성군	(32320)	횡성읍	3232011
		갑천면	3232034
평창군	(32340)	대관령면	3234037
인제군	(32390)	북면	3239032
양양군	(32410)	양양읍	3241011
		서면	3241031
충청북도	(33)		
청주시 상당구	(33011)	중앙동	3301151
		내덕1동	3301159
청주시 흥덕구	(33012)	성화·개신·죽림동	3301259
		봉명1동	3301263
		강서1동	3301265
충주시	(33020)	노은면	3302035
		지현동	3302056
		달천동	3302060
제천시	(33030)	청전동	3303059
청원군	(33310)	오창읍	3331012
청원군	(33310)	강외면	3331040
		북이면	3331043
영동군	(33340)	학산면	3334038
단양군	(33380)	단양읍	3338011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충청남도	(34)		
천안시 동남구	(34011)	북면	3401133
		원성1동	3401153
		봉명동	3401155
		일봉동	3401156
천안시 서북구	(34012)	성환읍	3401211
보령시	(34030)	주교면	3403032
		대천1동	3403051
		대천3동	3403053
아산시	(34040)	온양6동	3404056
서산시	(34050)	동문1동	3405052
금산군	(34310)	금산읍	3431011
		계원면	3431032
연기군	(34320)	전의면	3432035
부여군	(34330)	규암면	3433031
서천군	(34340)	서천읍	3434012
홍성군	(34360)	홍성읍	3436011
태안군	(34380)	남면	3438032
전라북도	(35)		
전주시 완산구	(35011)	효자2동	3501171
전주시 덕진구	(35012)	인후1동	3501254
		인후3동	3501256
		송천1동	3501265
군산시	(35020)	대야면	3502035
		해신동	3502051
		구암동	3502067
		수송동	3502069
익산시	(35030)	오산면	3503031
		용안면	3503036
정읍시	(35040)	입암면	3504032
		내장상동	3504053
		연지동	3504057
남원시	(35050)	금동	3505055
		향교동	3505057
김제시	(35060)	백구면	3506034
장수군	(35340)	천천면	3534034
고창군	(35370)	무장면	3537033
		성송면	3537037
부안군	(35380)	상서면	3538039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전라남도 (36)			
목포시	(36010)	용당1동	3601051
		용당2동	3601052
		연동	3601053
		유달동	3601065
		이로동	3601070
여수시	(36020)	소라면	3602031
		층무동	3602054
순천시	(36030)	송광면	3603032
		남계동	3603059
나주시	(36040)	성북동	3604055
구례군	(36330)	산동면	3633037
고흥군	(36350)	고흥읍	3635011
강진군	(36390)	강진읍	3639011
영암군	(36410)	미암면	3641039
무안군	(36420)	일로읍	3642012
		현경면	3642034
함평군	(36430)	함평읍	3643011
영광군	(36440)	법성면	3644037
경상북도 (37)			
포항시 남구	(37011)	대이동	3701159
포항시 북구	(37012)	중앙동	3701267
경주시	(37020)	안강읍	3702012
		중부동	3702051
		선도동	3702059
김천시	(37030)	아포읍	3703011
안동시	(37040)	안기동	3704059
		옥동	3704060
구미시	(37050)	원평1동	3705052
영천시	(37070)	동부동	3707051
상주시	(37080)	은척면	3708044
문경시	(37090)	영순면	3709031
		호계면	3709033
		집촌2동	3709058
		집촌3동	3709059
경산시	(37100)	남산면	3710034
의성군	(37320)	의성읍	3732011
영덕군	(37350)	영해면	3735036
청도군	(37360)	화양읍	3736011
		각북면	3736033
		매전면	3736037
고령군	(37370)	덕곡면	3737031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경상남도 (38)			
진주시	(38030)	일반성면	3803035
		상대1동	3803061
사천시	(38060)	사천읍	3806011
김해시	(38070)	진영읍	3807011
		대동면	3807037
		칠산서부동	3807056
		활천동	3807058
거제시	(38090)	사등면	3809036
양산시	(38100)	삼성동	3810052
		소주동	3810055
의창구	(38111)	대산면	3811132
		의창동	3811151
		명곡동	3811153
		용지동	3811155
마산합포구	(38113)	자산동	3811358
		교방동	3811361
마산회원구	(38114)	회성동	3811455
		구암2동	3811461
고성군	(38340)	고성읍	3834011
거창군	(38390)	거창읍	3839011
합천군	(38400)	울곡면	3840035
		초계면	3840036
		가회면	3840044
제주특별자치도 (39)			
제주시	(39010)	한림읍	3901011
제주시	(39010)	애월읍	3901012
		조천읍	3901014
		한경면	3901031
		일도1동	3901051
		이도2동	3901054
		용담2동	3901058
		노형동	3901066
서귀포시	(39020)	남원읍	3902012
		서홍동	3902058
		대천동	3902060
		예래동	3902062